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연구진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필요

- 2013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년도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수행¹⁾함
 - '16년도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²⁾함
 - '20년 6월말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신청한 시군구는 총 110개이며, 읍면동으로는 626개소임
 - 이중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수행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주민자치회 인지도, 조직 구성,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17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과 자치 역할의 조사 등

1) 김필두 외(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2)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표 조사
 - 조례제정, 자치회 구성현황, 추천제도입, 사전교육 이수제,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활용, 주민참여예산 연계, 특이사항 등 조사 분석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 주민자치회 실태분석 종합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중 3.5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에는 40%이상의 응답자들이 행정 및 주민간의 소통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였음
 - 2017년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와 동일한 문항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의 위상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 자치기관이자,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이 주된 역할이라고 하였음
-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
 - 위원 선출과 정수 조정, 주민총회와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제도 개선사항의 중요성
 -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와 정기적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운영의 향후 개선점
 - 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전문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힘
 - 지자체 재정 지원, 자체 재원 확보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강화할 사업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종합

- 본 연구의 주민자치회 실태분석을 종합하면 일정비율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조사표 조사에 의한 성과분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룹별로 우열을 가리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진행의 실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평가 항목은 크게 근린자치 기반조성(행정적,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음
-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홍보가 비교적 양호한 것에 비해 시군구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동 분야의 지자체별 평가결과의 차이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내용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에서는 최근 조례 제개정,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운영의 명시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에 주민자치회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백분위 평가점수가 25% 가량으로 조례에 반영된 지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자치회의 재정여건 개선의 높은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재원, 사업의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재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음
 - 실태조사와 첫 번째 평가항목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개선 필요성과 문제점이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재원의 규모보다는 주민자치회 재원분야의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구성(구성의 방법, 위원 선출 절차 등)이 다소 미흡한 것에 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결과 해석이 가능할 것임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에서는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참여인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보다는 주민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이것은 실태분석에서 주민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지역사회내 위상 강화
 - 대표적인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위상 정립 및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함
 -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 및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포함한 주민자치회의 지역 특성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민주적 운영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구성에 민주적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대표성 제고가 필요함
 -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의 고도화 추진
 - 주민참여 개방성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의 재정력 확보와 사업실행의 내실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의 설립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의 설계 및 시행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재정지원 방안, 주민자치회 운영 표준매뉴얼의 제작, 현장 지향적 교육의 강화, 역량 수준 “상”, “중”, “하” 그룹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시행
-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확립 및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처리 범위 명확화 필요
 -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
 - 주민자치회 추진에 대한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및 시행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3절 연구 분석의 기본 틀	8
제2장 주민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	9
제1절 주민자치의 이념과 가치	11
1. 주민자치의 개념	11
2. 주민자치의 이념 및 가치(I):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13
3. 주민자치의 이념 및 가치(II):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14
4. 주민자치회의 필요성	15
5.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정의	17
제2절 주민자치 정책방향 및 제도 고찰	18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배경 및 운영 과정	18
2.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 및 운영 과정	18
3.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협력형' 모델	24
제3절 정부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및 의미	30
1. 표준조례의 의의	30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주요 내용	31
3. 정부 표준조례안 주요내용의 의미	45
제4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48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48
2. '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51

제3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분석	55
제1절 조사설계	57
1. 조사의 목적	57
2. 인식조사 조사설계	57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 분석	58
1. 인식조사 내용	58
2. 설문조사 결과분석	59
3. 선행연구와의 인식도 비교분석	86
제4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 평가	91
제1절 성과 평가 조사의 개요	93
1. 성과평가 조사 설계	93
2. 성과평가 조사 내용	93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 평가 및 분석	105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 평가	105
2. 성과 평가 분석결과	107
3. 평가 결과의 종합	119
제5장 종합 및 정책제언	121
제1절 연구의 종합	123
1. 주민자치회 실태분석 종합	123
2.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종합	124
제2절 정책 제언	126
1.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지역사회내 위상 강화	126

CONTENTS

2. 주민자치회 구성에 민주적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 강화	127
3.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	130
4.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확립 및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132
【참고문헌】	135
【부록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설문지	139
【부록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구성과 운영 서면조사표	151
【부록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지표(2020년)	164
【부록 4】 2020년 6월 기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626개 읍면동, 118개 시군구	167
【부록 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2020년 4월 기준)	173

표목차

[표 1-1] 연구 분석의 기본 틀	8
[표 2-1]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 변화 및 정책 과정	19
[표 2-2]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제도 비교	29
[표 2-3] 주민자치회 당초 모델 및 행안부 시범실시 모델 비교 ..	49
[표 2-4] 2020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 시군구와 읍면동 현황	52
[표 3-1] 지역별 설문지 응답자 수	59
[표 3-2]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	83
[표 3-3]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 ..	84
[표 3-4]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	85
[표 3-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도 비교(2017년, 2020년) ..	87
[표 3-6] 주민자치회 이후 달라진 점 비교(2017년, 2020년)	87
[표 3-7] 주민자치회의 성격 비교(2017년, 2020년)	88
[표 3-8]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 비교(2017년, 2020년) ..	89
[표 3-9]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비교(2017년, 2020년)	89
[표 3-10]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비교(2017년, 2020년)	90
[표 4-1]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108
[표 4-2] 조례 내용의 그룹별 평가 결과	111
[표 4-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113
[표 4-4]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116
[표 4-5]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118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3-1] 주민자치회와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인식	60
[그림 3-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사항	62
[그림 3-3]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1)	64
[그림 3-4]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2)	64
[그림 3-5]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선출방법	67
[그림 3-6] 주민자치회의 기능	68
[그림 3-7]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	69
[그림 3-8]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	70
[그림 3-9]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71
[그림 3-10]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1) ...	73
[그림 3-11]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2) ...	73
[그림 3-12]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3) ...	74
[그림 3-13]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1) ...	77
[그림 3-14]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2) ...	77
[그림 3-15]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1) ...	80
[그림 3-16]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2) ...	80
[그림 3-17]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3) ...	81
[그림 3-18]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	83
[그림 3-19]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 ...	84
[그림 3-20]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	8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 분석의 기본 틀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 2013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년도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수행¹⁾
 - '16년도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²⁾
 - '20년 6월말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신청한 시군은 총 118개이며, 읍면동으로는 626개소임
 - 이중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수행

□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

- 주민자치회 인지도, 조직 구성, 운영 실태 및 인식조사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17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과 자치 역할의 조사 등

1) 김필두 외(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2)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표 조사
 - 조례제정, 자치회 구성현황, 추천제도입, 사전교육 이수제,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활용, 주민참여예산 연계, 특이사항 등 조사 분석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정책제언**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위상 재정립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및 조례의 정비
 -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도시형 및 농촌형)
 -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 및 과제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민주적 운영방안 모색
 -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17년 5월 이후 2019년 상반기(6월)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조사
- '17년 5월 이전/이후 주민자치회 관련 현황과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의 비교 분석

□ 내용적 범위

- (현황파악 및 분석) '19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운영실태 분석
 - 위원 구성 현황, 수행사무 처리 방식 등 시범실시지역 비교·조사 등
 - 주민자치회 목적에 부합한 제도 운영 여부
 -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 (성과평가) '17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에 대한 구조화된 조사표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
 - 평가지표(행·재정적 지원, 구성 및 운영, 재원 및 사업, 주민화합 등)에 의한 성과분석 평가
 - 시군구의 재정지원, 조례재정내용 및 읍면동의 행재정적 지원책 등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시 공개모집, 분과위원회 구성, 사회적 약자 비율 등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과 사업 추진 등
 - 주민총회, 주민참여 정도 및 주민자치회의 읍면동에서의 위상 등
- (조사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2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

- 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수용성 확보방안
 -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 주민조직 구심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구성 및 운영방식
- ② 기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사항 등

□ 대상적 범위

- '19년 6월 시범실시에 참여하고 있는 2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1차 시범실시 참여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2차 시범실시에 추가적으로 참여한 1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19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참여한 16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조사대상은 주민자치회 관련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 주민 : 일반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등
 - 공무원 : 시범지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주민자치 관련 이론과 실태 분석
 - 주민자치 관련 정부의 정책 자료와 관련 법·제도, 표준조례안,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의 정책 지침 등
 - 국내·외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등 분석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 조사대상 주민자치회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 주민자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등 운영 현황

□ 설문조사 및 조사표 조사

○ 설문조사

- 대상 : 214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주민
- 방법 : 정형화된 설문조사표 활용
- 내용 : 주민자치회의 인지도,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의의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회의의 향후 활성화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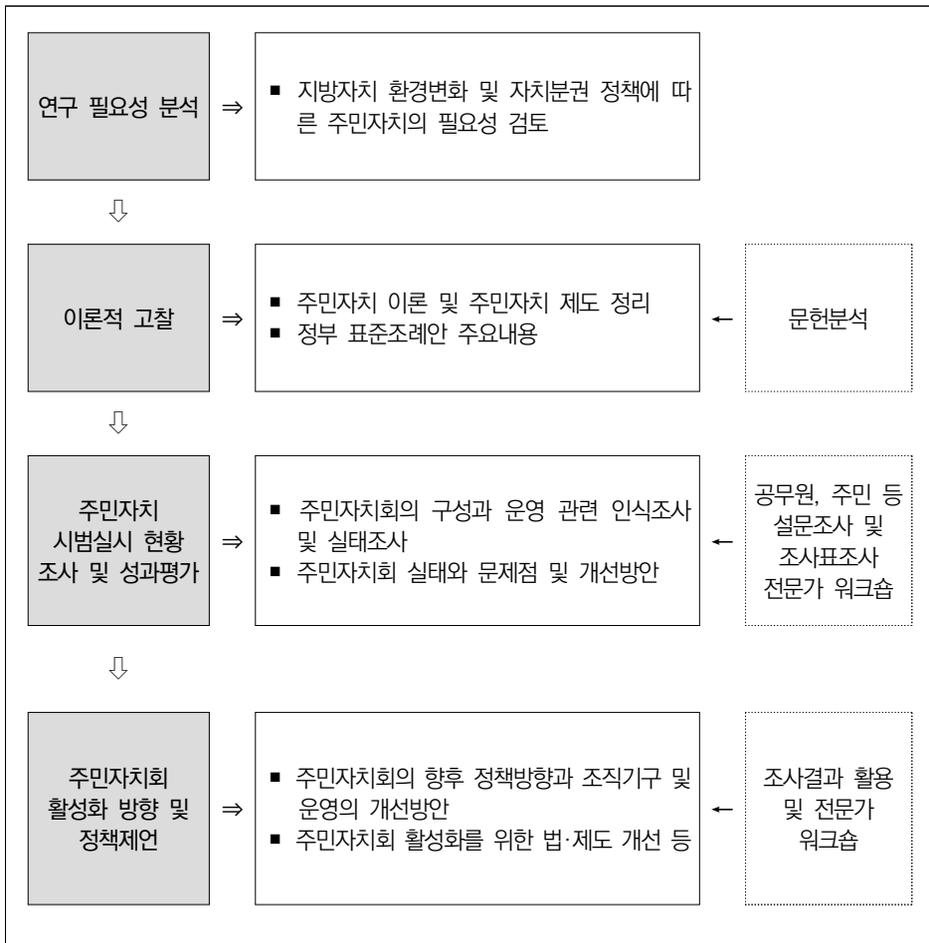
○ 조사표 조사

- 대상 : 214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장 또는 담당 공무원
- 방법 : 정형화된 조사표 활용
- 내용 : 주민자치회의의 법제화,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홍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기여 등

제3절 연구 분석의 기본 틀

- 연구 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 전체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각 연구분야별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표 1-1] 연구 분석의 기본 틀



제2장

주민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

제1절 주민자치의 이념과 가치

제2절 주민자치 정책방향 및 제도 고찰

제3절 정부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및 의미

제4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제2장 주민자치 관련 이론적 논의

KRILA

제1절 주민자치의 이념과 가치

1. 주민자치의 개념

- 주민자치란 지역적 사무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고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함(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영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사무 처리 방식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함
- 주민자치는 근린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근린’은 ‘가까운 이웃’이며, ‘근린 사회’는 ‘사람들이 가까이 이웃하여 서로 잘 알며 친숙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지역사회의 최소 단위’임
 - ‘근린’(neighborhood)은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를 두고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인 이웃과의 교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area)’로 정의내릴 수 있음(Davies and Herbert, 1993:1)
-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인 ‘근린’과 유사한 개념이 ‘마을’과 ‘동네’임
 - 마을은 도시화 이전, 주거와 농업에 적합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네’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행정구역을 의미함
- 주민자치는 ‘근린이라는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주민자치는 근린단위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government)가 아닌 ‘통치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음
 - ‘거버넌스’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정부나 시장 등의 단일 행위자 또는 행위부문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등장함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조직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임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근린단위의 주민에게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행하는 주체자들의 이에 상응하는 자체적 역량강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 상담(consultation), 숙의적 포럼(deliberative forum), 주민의 직접통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종합하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의제(문제)를 발굴 및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초의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함.
-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초대된 공간’에까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생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주민자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 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곽현근, 2015)

2. 주민자치의 이념 및 가치(I):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 대안적 민주주의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이며,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의회제도에 기초하여 대의적 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에서 유래함
 - 일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심사숙고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익을 창출해내는 과정, 바로 이러한 심의과정 자체에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체제임(김기현, 2013)
-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래 마을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탄생한 용어임(곽현근, 2017)
 - 정당과 같은 거대조직에 의해 작동하는 대의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또는 민초(民草)들의 조직화와 직접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는 정치과정을 강조함
 - 풀뿌리민주주의는 풀뿌리 관계형성을 통해 집단역량을 키운 주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바람과 요구를 적절히 표출하게 되고, 정부는 이러한 집단역량을 갖춘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좋은 정부’를 만들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함
-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의 단순한 투표 참여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결사체적 참여 및 역량에 기반을 두고,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의 의미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리가 반영된 것임(김흥주·곽현근·임승빈, 2018)
 -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참여를 넘어, 주민의 사회적 ‘연대(solidarity)’와 ‘행위 주체성(agency)’의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Bhattacharyya, 2004)

-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의는 마을 단위의 주민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주민자치의 개념을 포함시킴. 기존 지방정부와 주민자치를 이분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김흥주, 2019)
 - 단순히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민주주의 혁신적 의미를 지님
 - 마을의 집합적인 역량을 키우고, 이러한 공동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지방정부가 반응하게끔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함
-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주민자치회 등 각기 파편화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호 보완적인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함
 - 이러한 과정은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적 지원체계와 결합하며,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성장하며, 능동적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증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됨

3. 주민자치의 이념 및 가치(Ⅱ):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 Brodie et al.(2009)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속 주민자치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수평적 참여와 수직적 참여)
 - 첫째, 정부가 마련한 제도 참여와는 무관하게 주민들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유형의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결사체적 활동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참여'의 성격을 가짐
 - 둘째, 주민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참여제도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 및 서비스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

- 이러한 유형에서 참여는 합법적 권력과 자원을 가진 공식기관인 국가(행정)와 주민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직적 참여’의 성격을 갖음
-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속 주민자치는 수평적 및 수직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음
 - 주민자치는 ‘친숙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과 관련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함(곽현근, 2017)
 -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참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제도에의 참여까지를 주민자치의 의미에 포함시킴. 주민자치를 마치 지방정부와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정부서비스의 보완 또는 보충 수단으로서 주민활동을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곽현근, 2015).

4. 주민자치회의 필요성

-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기능이 마을이나 동네 단위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린자치가 마을(동네) 단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Forgotten, 2016: 37)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및 동네에서 △주민 발전 △회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형태를 말함(신윤창·손진아, 2017)

- 읍·면·동 단위의 생활공간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자, 근린생활공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임(이현우·최준규, 2019)

○ 김필두·최인수(2017)는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필요성	주요 내용
①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둠 ■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심점이 됨 ■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최선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정으로서 강조되고 있음
② 지방자치의 중심 축 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린생활기능의 주민 직접 수행을 위해 주민의 자기결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필요함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주민자치조직이 필요함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린자치지원기능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린자치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양자 간의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④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은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단위임 ■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민중심 지역분권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민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으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민조직이 필요함
⑤ 주민과 주민주권의 대표적, 민주적 권한자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주민단체, 시민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받는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필요함

필요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단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주권 실현의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 대표조직인 읍면동 주민센와 읍면동장, 주민의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지역사회 주민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이 의결되고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며 항시적 집행적 의결기구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

5.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정의

- (법적·조례적 근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제1조 및 제2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
- (정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됨
-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등을 추진함

제2절 주민자치 정책방향 및 제도 고찰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배경 및 운영 과정

- 1999년 민원발급, 사회복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를 제외한 청소·주택·교통·일반행정 사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 설치·운영됨
- 1998년 IMF 국가부채 위기상황과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요구 및 정부조직 축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의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제기됨
 -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읍·면·동 단위의 행정인력을 축소해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됨
- 시군구 본청으로 행정인력을 이관하고 남은 유휴공간에 문화 및 복지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됨
 -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다양한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심의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주민자치 구심점 형성의 미비, 문화·여가·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획일적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한계가 지적되어 읍

2.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 및 운영 과정

가.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및 발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안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논의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의 대안적 차원에서 보다 더 독립적이며 자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설계와 도입이 시행되었음

- 주민자치의 실질적 행위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주민에게 주민자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주민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정하고 3가지 유형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함

[표 2-1]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 변화 및 정책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95.5	■ 도 및 특별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논의(신한국당 정책토론회)
1996.12	■ 자치구 구청장의 임명제 논의(서울시 지역 국회의원 추최 토론회)
1998.3	■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1999	■ 주민자치센터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운영토록 규정
2005.10~2006.2	■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해 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읍·면·동 준 자치단체화, 지방광역행정기구 설치제안
2008.2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시킴
2008.8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 결정(민주당)
2008.9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에 대한 합의(대통령과 민주당 대표합의)
2008.11~2009.2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2009.3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본회의 의결로 통과
2009.3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설치
2010.4~2010.9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확정 및 본회의 통과
2010.9~2010.10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9월)·시행(10월)
2012.12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기본방향 의결
2013.5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7~2014.12	■ 전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14.12	■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시점)
2014.12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 채택

연도	주요 내용
2015.10	■ 전국 18개 지역 시범지역 추가선정, 2016년 12월까지 사업 연장
2017.7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실질화' 포함
2018.3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제명 변경
2018.9~2019.3	■ 자치분권종합계획, 자치분권시행계획(안)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고려, 행정안전부 새로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마련 및 지자체 시달
2019.3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 입법발의, 20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관련 내용 포함, 실질적 주민주권의 강화
2019.4~12	■ 전국 214개('19.4) 및 408개('19.12) 지역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및 행안부 승인
2020.6	■ 전국 626개 지역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및 행안부 승인
2020.7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입법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관련 내용 포함

자료: 설선미·오재일(2016) 재구성

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2010년 10월 1일)

조항	내용
제20조 (주민자치회 설치)	■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근거 마련
제21조 (주민자치회 기능)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화합 및 발전, 법령,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으로 규정함

- 특별법 근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반영

-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2010.10.)
 -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계획 반영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 자치회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시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특별법 제정, '99.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령 제정, '03.4)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별법 개정, '08.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특별법 제정, '13.5)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 공포, '18.3.20.)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특별법 제정, '10.10)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history>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2013년 5월 28일)

조항	내용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21조 주민자치의 기능에서 ‘읍·면·동 행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라는 문구가 2013년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서는 사라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를 마련해 2013년 7월부터 전국 31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치분권법」으로 법제명을 변경·개정하였으며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는 동일(2018년 3월 20일)
 - 2019년 3월 자치분권위원회(舊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시범 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함
 - 자치분권법에 명시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입법발의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됨
 - 2020년 7월, 정부 입법발의로 국회에 재제출 되어 입법논의중임

다. 주민자치회 실시모델 개발 및 시범실시³⁾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결정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 읍·면·동사무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의 3개 모형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도출함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명회 자료(2013)’를 기준으로 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보도자료, 2017)’을 추가하여 작성함

- 주민자치 관련 현장방문, 토론회, 위원회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 모델 확정 및 3개 모형 모두 시범실시 대상으로 함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체하여,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됨
 -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행정안전부장은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하게 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 모델의 확정
 -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3개 모델을 모두 시범실시 대상으로 제안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면서, 지역주민과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협력형’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로 확정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의 확정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시행함
 - 1단계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단계로 18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함

단계	시범실시기간	주요 내용
1단계	2013.7.~ 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166개의 읍·면·동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수행능력과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31개 읍·면·동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 ■ (지역별) 경기 5, 충남 4, 광주 3, 기타 19 ■ (행정구역별) 읍 4곳, 면 7곳, 동 20곳
2단계	2015.10.~ 20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31개 읍·면·동은 2단계에도 계속 실시 ■ 추가로 18개 읍·면·동이 시범실시에 참여하여, 총 49개 읍·면·동이 2단계 시범실시에 참여

- 한편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읍·면·동이 소속된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된 자체적인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3.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협력형' 모델

가.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제도가 보완되고 발전한 형태로 행정조직으로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됨
 - 행정조직과 주민자치조직이 상호 협력하는 모형으로서의 협력형 주민자치회가 기본 모델로 채택되고 시범실시 사업에서 설치 운영됨
-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존치하고 기본적인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등 현행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수행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기능,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기능,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⁴⁾의 협의·심의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는 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보완 및 발전 형태로 협력형 모델을 채택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에 적시되어 있는 협의 및 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등이 포함됨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중심으로 마련된 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8년도 작성된 것으로 이전 2017년 이전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음
- 기존 읍·면·동별 주민센터는 존치하며 민원 및 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 기능 역시 그대로 수행함

구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제2조(정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대한 용어의정
제3조(운영원칙)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1.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 단, 도서 및 벽지지역, 인구·면적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교통통신 등이 불편한 지역에 한해 분회 설치가능
제5조(기능)	1. 주민자치업무(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자치업무) 2. 협의업무(주민생활 밀접한 관련 업무) 3. 수탁업무(행정기능 등 주민자치센터 등 수탁 처리)
제6조(위원정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 30인 이상(20.4월 개정안)
제7조(위원자격)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된 자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제8조(권한)	1. 협의권한(주민생활 밀접한 관련 업무) 2. 수탁권한 3. 주민자치 관련 권한 ※ 본 8조(권한) 조항은 20.4월 개정안에서는 삭제됨
제9조(위원선정 및 위촉)	1. 공모신청 및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2. 읍·면·동장,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사전 주민자치학교 이수) - 특정 성별이 각호별 총원 60% 이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제11조 (주민자치회 장)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의원 중 호선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차기회장은 간사(간사 보조를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 및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감안 예산범위 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임명 가능)
제14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일반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 개방성, 분과위원장의 역할 등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규정
제14조의 2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며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1.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2. 행정사무 의견제시 3. 차년도 마을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보고 및 결정
제14조의 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제15조(운영)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월 1회)와 임시회(필요에 따라 위원 1/3의 요청시)를 운영하고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
제16조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 각종 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
제17조 (정치적 중립)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18조·제19조 (임기 및 대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제20조 (위원의 해촉)	1.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7조 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선거 운동했거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경우 4. 권한남용 금지 의무위반을 한 경우

구분	주요 내용
	5. 사익추구 금지의무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 상당부분을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책수립에 대한 의견제출, 소속공무원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전용사무실 제공,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5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추진이나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23조·제24조 (감독 및 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위탁한 업무에 대한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
제25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4조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다. 타 기관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재정 및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 기술,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함
 - 위탁사무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고 필요시 시군구청장이 회계감사를 실시함
-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설치되는 경우,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표준조례(안)의 부칙(제3조)에 적시함
 - 결국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함

-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주민센터’와의 관계
 -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와 유사하나,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기능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 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됨

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제도 비교⁵⁾

-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기 이전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의 수준에서 운영되었음
 -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지적됨
 - 1998년 이후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 이후 읍·면·동사무소에 남는 유휴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설계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것만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일본의 자치조직인 정내회(町内會)나 자치회(自治會)가 아닌 커뮤니티센터가 그 벤치마킹의 모델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됨(김찬동, 2017)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자문위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인식,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보다 실질적인 읍면동 자치의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음

5) 김홍주(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대전 세종연구원) 일부 발췌·정리

-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더해 읍면동 행정과의 협의 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지어짐
-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주민자치회 위원정수의 확대, 사무국의 설치, 자치계획의 수립 및 주민총회의 개최, 개방된 분과위원회의 운영, 자치단체장이 위촉 등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2017년 주민자치회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변화를 가져옴

[표 2-2]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제도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읍면동 민관협치기구 주민자치 대표기구 및 협의·실행기구	읍·면·동 장의 자문기구
법적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기능	주민자치사무, 협의 및 자문사무, 수탁사무,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문화·복지·편익기능 등)
조직	분회 조직, 일반 주민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 타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구성	분과위원회의 주민개방성 없음
재정	자체재원(회비,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주민세,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 다양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이 거의 없음(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제3절 정부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및 의미

1. 표준조례의 의의

-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은 각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사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현실화 하기 위한 수단이 됨
 -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법제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각 자치단체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규율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자치행정의 자기책임성은 지역적 특성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자기 스스로 설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이에 「헌법」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표준조례를 제공하는 목적은 국가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와 법령과 합치하는 조례의 원활한 제정·시행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규율이 제시됨⁶⁾
 -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부처에서 모범적인 조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해당됨
 - 표준조례는 법령의 합치성 및 조례 제정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법령의 제정과 이행에 대한 편의성 도모 측면이 강함
 - 따라서 실효적인 조례의 제정이라는 차원에서도 표준조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함

6) 이준서(201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다만 정부의 표준조례안의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안내는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례가 제정되게 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현실임
- 중앙 행정부는 표준조례안의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조례 제정과정에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표준조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⁷⁾
 -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입안할 수 있음
 - 표준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 없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은 전체 5장 25조 및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그 구성은 1장 총칙, 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5장 보칙으로 이루어짐

가. 목적(제1조)

- 의의
 -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조항을 규정함

7)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 근거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본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조항을 규정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제2조), 운영원칙(제3조), 설치(제4조), 기능(제5조)

○ 이 조례에서 필요한 용어정의를 위해 정의조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 이 조례에서 필요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함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제27조) 및 기능(제28조)을 적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용어 정의를 위해 하위 규범인 조례에서 법률(특별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 규정을 마련함
 - 특별법 제27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특별법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기능으로 정하고 있음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관해 조례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함이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입법경제에도 부합함(법제처, 2013)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는 제8조의 주민자치회의의 권한과 관련하여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에 내용을 담고 있는 곳도 있음
- 2020년 4월 개정된 표준조례안은 주민자치업무를 기존 3호 업무에서 1호 업무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업무의 의미를 강조함

다. 운영 및 구성(제6조~제15조)

○ 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원 수와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주민자치회의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상한 폐지
- 구성원(위원) 수에 대해서는 20명 이상 50명 이하(2020년 4월 개정 표준조례안은 30명이상으로 규정)로 구성하되, 단서 조항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두고 있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최소 30명 이상, 2020년 4월 개정안)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자율적으로 규모 결정)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제한조건을 설치함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자격 연령대 조정 가능 및 연령대 하향 시 단서조항 수정 필요 등 표준조례안을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2020년 4월 표준조례안에 반영)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주민자치회 권한 관련하여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 총 3가지 권한으로 구성하여 조례에서 언급되고 있음
 -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항 1호~3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
 - 본 법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회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기능으로 정하고 있음
 - 협의 권한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능에 대한 권한

- 수탁 권한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권한
-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으로 자치(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 (※ 지역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께 규정할 수 있음.
2020년 4월 표준조례안에서는 삭제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 자격 필수 조건으로 본 조례에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적 운영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역량 및 주민자치 정책사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임
-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위촉되는 것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읍면동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임명(인사)권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권을 부여함으로써 읍면동내 민관의 2개 주축 조직인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기존 표준조례안에 존재했던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는 삭제되었으며, 제11조는 주민자치회의 장을 선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해 간사 선임 또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사 또는 사무국 등 실무인력·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임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에는 감사를 두며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음
 - 감사는 감사결과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에 보고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내·외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임

- 본 분과위원회의 개방성과 관련한 조항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이었으나,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조항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하되, 분과위원회를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주민자치회의 집행력 확장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임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주민총회는 읍면동에서 대표적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조직체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기능하며, 연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였음
-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자치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되어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과 주민참여의 기제로서 작용하는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이며, 제14조의 3은 자치계획의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17년 이후 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중 하나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주민자치업무에서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의 개최일 것임
 -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읍면동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계획, 마을 활성화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주민총회에서는 본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마을의 주요한 의제 중심의 선호투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임
 - 향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중기적인 본연의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주민자치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의 개최와 운영 등에 대하여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의무 등(제16조~제20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의무(제16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1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제1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제1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마.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관계(제21조~제22조)

-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1조 제1항)
 - 주민자치회의 위상 및 기능·역할을 기존 주민참여기구들간 유연하게 조직화하고, 연계 및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제21조 6항), 주민자치회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제21조 7항)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각 관계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의미가 있음(제22조)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바. 감독(제23조), 보험(제24조), 운영세칙(25조)

- 한편 보칙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였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의 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다양한 경우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25조의 운영세칙과 관련한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 받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사.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 유효기간(제4조)

-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은 부칙으로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을 내용을 하는 4개의 조를 구성하며, 이때 경과조치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3. 정부 표준조례안 주요내용의 의미

-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및 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역량 제고, 지역 자율성 존중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함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상한을 폐지함
-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정에서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과 추천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변화임

- 기존에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후 공개추첨제에 따른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추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주민참여 기회 보장
 - 표준조례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 및 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조례안 제9조(위원의 선정)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외국인 주민 수가 매해 증가함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함
-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제로서의 개방성 있는 분과위원회,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등을 규정(제14조 등)하고 있음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17년 이후의 표준조례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의 운영일 것임
 - 또한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됨
-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함
 -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 및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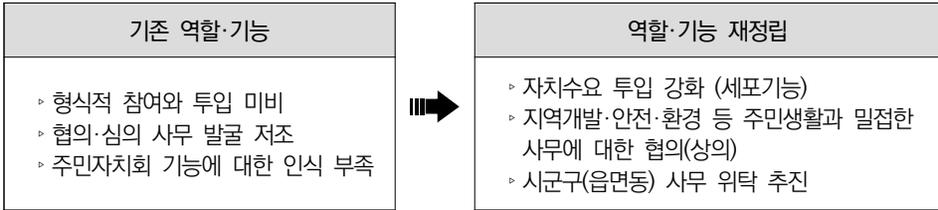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자체장의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의무 신설
- 정부 표준조례안을 통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
- 표준조례안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적극적인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4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도입배경 및 모델

- 도입 배경
 -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과의 수평적 분권차원에서 주민주권, 주민자치 강화 요구의 심화
 - 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필요성 증대
 -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주민이 중심되는 행정기능의 수행
 -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
- 시범실시 시행을 위한 주민자치회 검토 모델
 - (공통) 주민자치사무 및 위탁기능 등 수행기능 확대
 - (협력형) 읍면동 사무소 존치, 읍면동사무의 협의 기능, 위탁사무, 사무기구 설치
 - (협력형 보완모델) 협력형 + 위임사무 수행기능 추가
 - (통합형)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 읍면동 사무소 + 주민자치회 기능 통합 수행
 - (주민조직형) 읍면동 사무소 폐지(수행기능 시군구로 환원), 순수 주민자치 조직(협의 기능 없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
 - 1단계(2013년 7월 ~ 2014년 12월) 협력형 모델로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
 - 2단계(2015년 10월 ~ 2016년 12월) 협력형 모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18개 읍면동 추가되어 총 49개소 읍면동에서 실시



- 3단계(2017년 12월 - 현재) : 협력형 보완 모델, 시도 자율 실시, 행정안전부 모니터링, 시범지역에 전문가(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17년 83개 읍면동에서 실시, 2019년 6월 214개 읍면동, 12월 408개 읍면동, 2020년 6월 626개 읍면동에서 실시

○ 당초 모델(행정체제개편위원회)과 시범실시 모델의 비교

-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모델은 당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협력형 모델 내용을 일부 축소하여 추진

[표 2-3] 주민자치회 당초 모델 및 행안부 시범실시 모델 비교

구분	당초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안전부(시범실시)	
		1단계/2단계(박근혜 정부)	3단계(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의 권한	사무의 의결과 집행	사무의 수행	운영규약 제정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의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협의사무 수탁사무 주민자치사무

구분	당초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안전부(시범실시)	
		1단계/2단계(박근혜 정부)	3단계(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의 기관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사무기구 : 유급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없음	사무국 설치 ; 간사, 자원봉사자-운영세칙으 로 정함
	하부조직 : 통리단위	없음	지회 또는 분회 설치
	연합회 : 시군구 단위	없음	없음
위원선정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1. 시·군·구청장 추천 2. 시·군·구의회의장 추천 3. 시·군·구교육지원청장 추천 4. 당해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1. 읍면동장 추천 2. 이통장연합회 추천 3. 해당 지역대표연합단체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폐지 공개모집→ 주민자치교육이수 (6시간 이상)→ 공개추첨→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군구청장)
공무원 파견	시군구 직원의 파견	없음	주민자치분야 전담, 전문 직위 또는 임기제 공무원
읍면동장의 의견제출권	없음	있음	없음

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개략

- '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전국의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됨
 - '13.6월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으며, '15.6월 개정된 표준조례안을 재차 안내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
경됨
- '15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18개소를 추가하여 총 49개소에서 실
시되게 되었으며, '17년에는 83개소를 확대되었고 재차 개정된 표준조례
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됨

-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운영하고, 기존의 표준조례안이 대폭적으로 수정된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읍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함
 - '18년 개정된 표준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강화하며, 위원선정 추천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을 전국적으로 '19년 6월 214개소, 동년 12월 408개소, '20년 6월 626개소로 크게 증가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발의로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는 20년 7월 정부입법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논의중에 있음

2. '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전국적으로 2020년 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는 626개소⁸⁾이며, 이중 '20년 신규로 선정된 읍면동은 50개 시군구에 218개소 읍면동임

8) 2020년 6월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626개 읍면동 현황은 부록3에 수록함

[표 2-4] 2020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 시군구와 읍면동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27)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강원 (13)	춘천시	조운동
	관악구	상현동		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2동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은평구	녹번동, 불광1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3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공주시	정안면
인천 (36)	남동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간석1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충남 (19)	계룡시	신도안면
				논산시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상월면, 부척면, 연산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취암동, 부창동
				보령시	대천4동
				부여군	내산면
	서천군	한산면			
	청양군	정산면			
	홍성군	장곡면, 결성면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갈산1동, 부개1동, 부개3동	전북 (1)	익산시	영등1동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신현원창동, 가좌4동, 검단동		전남 (13)	나주시	왕곡면, 송월동, 빛가람동
중구	신흥동, 동인천동,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순천시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황전면, 덕연동
광주 (11)	광산구			하남동, 첨단1동, 신가동, 신창동	장성군
	남구	월산5동, 주월1동		해남군	황산면, 북평면
	동구	동명동, 지산2동	경북 (8)	안동시	중구동, 명륜동, 태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북구	용봉동, 매곡동, 문흥1동	의성군		의성읍, 안계면	
대전 (3)	서구	도마1동, 도마2동, 월평2동	경남 (24)	거제시	일운면, 하청면, 옥포1동, 옥포2동, 수양동
세종 (6)	세종시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새롬동, 종촌동			
경기 (57)	고양시	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			
	광명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6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은동		밀양시	상남면, 내이동, 삼문동
	군포시	군포1동, 오금동		사천시	별용동
	김포시	마산동		진주시	상봉동, 상평동, 가호동
	시흥시	정왕2동, 정왕4동, 과림동, 월곶동		창원시	총무동
	안산시	일동, 원곡동		통영시	중앙동
	파주시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파평면, 적성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		거창군	주상면, 응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평택시	오성면, 진위면, 송북동, 비전2동		남해군	창선면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팔탄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7동, 동탄8동		의령군	용덕면

제3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분석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 분석

제3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분석

KRILA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의 목적

- 주민자치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가시적인 성과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참고 자료 도출

2. 인식조사 조사설계

- 조사 대상: '19년 4월 기준 214개 시범 실시 읍면동 지역
 -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장 포함 5명
 - 담당 공무원: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읍면동장 포함) 등 5명 내외
 - 기타 이해당사자(전문가, 지원기관) 5명 이내
- 샘플크기: 2,500명 내외 (시범실시 지역 읍면동당 각각 10~15명 사이)
- 조사 방법: 표준화된 질문지(부록 1 참조)에 온라인 응답 또는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조사
- 표본추출방법: 해당 지역 내에서 무작위 추출
- 조사 기간: 2020. 6. 1 ~ 6. 10(10일간)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 분석

1. 인식조사 내용

- 다음은 주민자치회 현황 및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의 주요내용은 기초통계를 위한 응답자의 특성,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조사와 주민자치회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별
	시범실시 읍면동별
	신분별(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자치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의 관심과 참여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읍면동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기능 및 역할
	주민자치회 위상(행정 및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위원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인식
	위원규모 확대 및 분과 개방성에 대한 인식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도입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한 인식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대한 인식
	시군구청장 주민자치회 정책추진 의지

2. 설문조사 결과분석⁹⁾

□ 설문조사결과

- 표본 수: 총 1,726명
- 응답 지자체(시군구): 46개 시군구 / 전체 64개 시군구
- 응답자 수: 1,147명 (유효응답율 66.45%)
 - 신분별 : 주민자치회 위원 878명(76.55%), 공무원 94명(8.19%), 전문가 19명(1.66%), 주민 119명(10.37%), 기타 및 무응답 37명(3.23%)
 - 표본과 유효응답자의 수가 모두 1,000명 이상으로 충분하여 설문 도중 중단하거나 미입력된 표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3-1] 지역별 설문지 응답자 수

서울 (12/14)	관악구	339	1	울산 (2/2)	북구	26	9
	광진구		1		중구		17
	구로구		1	경기 (6/8)	김포시	99	11
	금천구		147		남양주시		13
	노원구		1		수원시		57
	도봉구		55		시흥시		16
	마포구		46		안산시		1
	서대문구		13	남양주시	1		
	양천구		56	강원 (2/4)	춘천시	70	56
	영등포구		1		홍천군		14
	강동구		16	충북 (1/1)	진천군	5	8
강서구		1					
부산 (1/4)	영도구	3	충남 (4/8)	논산시	131	80	
대구 (2/1)	달서구	15		1		예산군	20
	수성구			14		천안시	23
인천 (1/1)	연수구	30	전북 (2/2)	군산시	13	12	
광주 (4/5)	광산구	166		98		완주군	1
	남구		7	전남 (3/4)	곡성군	7	
	북구		33		담양군	86	
	서구		28		순천시	12	
대전 (3/4)	대덕구	76	21	경북 (1/1)	안동시	30	
	서구		12				
	유성구		43	경남 (2/2)	거창군	21	1
		창원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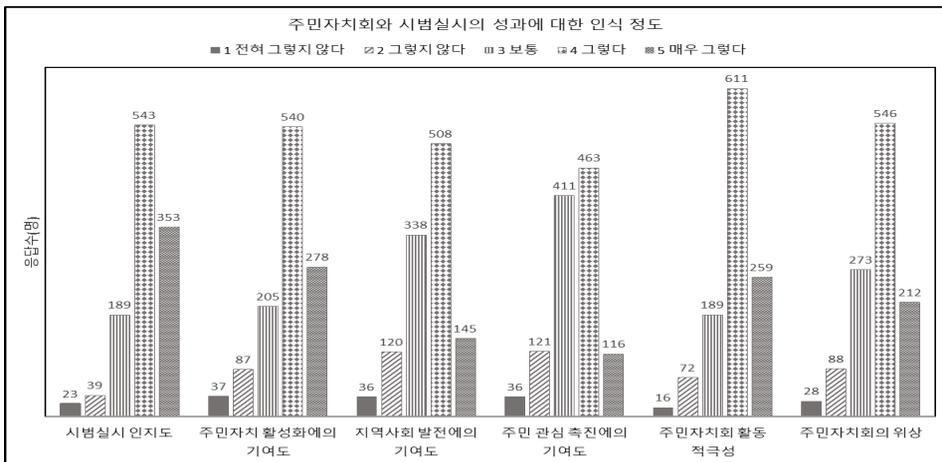
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4년,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서 중 일부 항목을 그대로 활용함

□ 주민자치회와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수(N=1147)				
				1	2	3	4	5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4.01	0.89	23	39	189	543	353
				2.01%	3.40%	16.48%	47.34%	30.78%
				5.41%		★	78.12%	
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3.82	0.99	37	87	205	540	278
				3.23%	7.59%	17.87%	47.08%	24.24%
				10.82%		★	71.32%	
3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사회(마을)가 많이 발전되었다	3.53	0.95	36	120	338	508	145
				3.14%	10.46%	29.47%	44.29%	12.64%
				13.61%		★	66.93%	
4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3.44	0.92	36	121	411	463	116
				3.14%	10.55%	35.83%	40.37%	10.11%
				13.69%		★	50.48%	
5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설정하고 자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3.89	0.87	16	72	189	611	259
				1.39%	6.28%	16.48%	53.27%	22.58%
				7.67%		★	75.85%	
6	주민자치회는 우리동네(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72	0.93	28	88	273	546	212
				2.44%	7.67%	23.80%	47.60%	18.48%
				10.11%		★	66.08%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그림 3-1] 주민자치회와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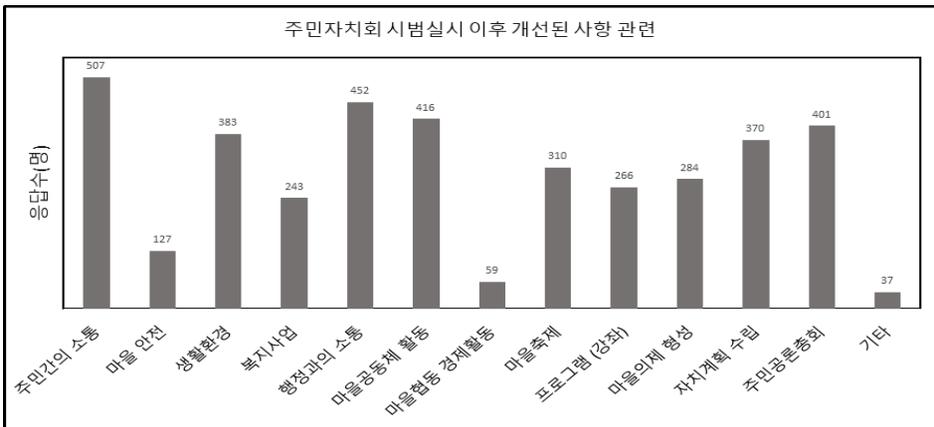
- [문항1]의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5.4%인 76명은 모르는 편, 16.5%인 189명은 보통 정도, 78.1%인 896명은 잘 안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종전에 비해 활동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0.8%인 124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17.9%인 205명은 보통정도, 71.3%인 818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지역사회가 발전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3.6%인 15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9.5%인 338명은 보통정도, 56.9%인 653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민 참여도’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3.7%인 157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5.8%인 411명은 보통 정도, 50.5%인 579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5]의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정도’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6%인 8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16.5%인 189명은 보통정도, 76.9%인 87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6]의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대표성을 띠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0.1%인 11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3.8%인 273명은 보통정도, 66.1%인 758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종합하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인지도’ 긍정 78.12%, 부정 5.4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차이 및 변화 인지도’ 긍정 71.32%, 부정 10.8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마을 발전 정도’ 긍정 66.93%, 부정 13.61%,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의제 설정 및 자치계획 수립’ 긍정 75.85%, 부정 7.67%,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 긍정 66.08%, 부정 10.11%로 나타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 및 우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문항4]의 ‘주민의 관심제고와 참여’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만

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거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의 관심제고와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한편, [문항7]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사항’라는 질문은 총 4개까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는데, 응답자들은 평균 3.3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기입하였고, 이 중 ‘주민들간의 대화와 소통’을 44.2%인 507명이 가장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마을협동경제 활동’은 5.1%인 59명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사항 관련 [문항 7]					
세부문항	응답수 (N=1147)	비율(%)	세부문항	응답수 (N=1147)	비율(%)
①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507	44.20	⑧ 마을축제	310	27.03
② 마을의 안전	127	11.07	⑨ 프로그램(강좌)	266	23.19
③ 생활환경 개선	383	33.39	⑩ 마을의제 형성	284	24.76
④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243	21.19	⑪ 자치계획 수립	370	32.26
⑤ 행정과의 소통	452	39.41	⑫ 주민공론의 주민총회	401	34.96
⑥ 마을공동체 활동	416	36.27	⑬ 기타	37	3.23
⑦ 마을협동경제 활동	59	5.14	계	3,855	336.1%

[그림 3-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개선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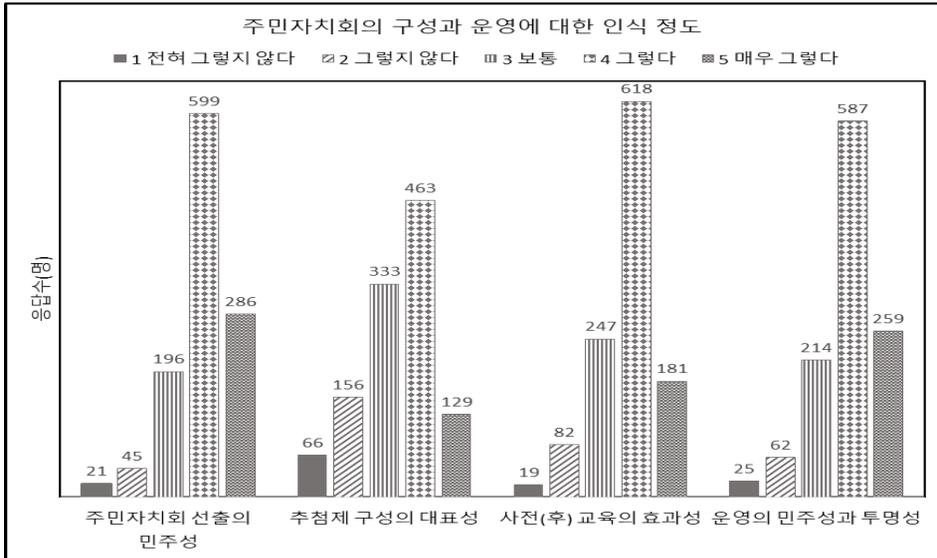


- ‘행정과의 소통’과 ‘마을공동체 활동’ 또한 각각 응답자의 35% 이상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20~30%대 응답률을 보이며 대체로 문항에 제시된 항목들이 대부분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다만, ‘마을의 안전’은 응답자의 11%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4개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한 이 문항에서, ‘마을의 안전’이 다른 항목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지, 개선된 점이 미흡한지는 설문조사 결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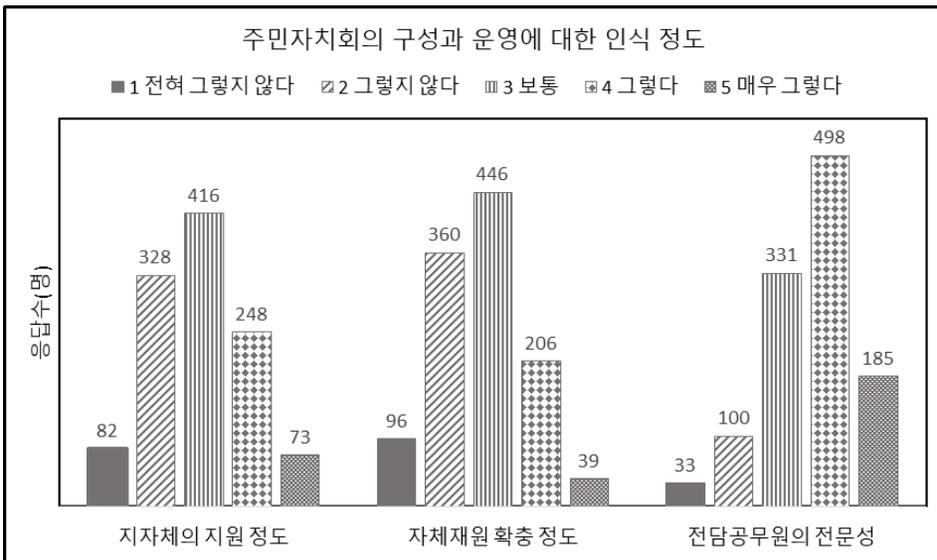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N=1147)				
				1	2	3	4	5
8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선출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95	0.86	21	45	196	599	286
				1.83%	3.92%	17.09%	52.22%	24.93%
				5.75%		★	77.15%	
9	주민자치회 구성시 추천제 실시가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3.38	1.04	66	156	333	463	129
				5.75%	13.60%	29.03%	40.37%	11.25%
				19.35%		★	51.62%	
10	주민자치회 구성시 사전(사후)교육이수제가 위원 활동에 도움을 준다.	3.75	0.86	19	82	247	618	181
				1.66%	7.15%	21.53%	53.88%	15.78%
				8.81%		★	69.66%	
11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87	0.90	25	62	214	587	259
				2.18%	5.41%	18.66%	51.18%	22.58%
				7.59%		★	73.76%	
12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	2.91	1.02	82	328	416	248	73
				7.15%	28.60%	36.27%	21.62%	6.36%
				35.75%		★	27.98%	
13	주민자치회 자체자원(회비, 마을기금 등)의 확충이 원활하다.	2.77	0.95	96	360	446	206	39
				8.37%	31.39%	38.88%	17.96%	3.40%
				39.76%		★	21.36%	
14	우리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3.61	0.95	33	100	331	498	185
				2.88%	8.72%	28.86%	43.42%	16.13%
				11.60%		★	59.55%	

[그림 3-3]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1)



[그림 3-4]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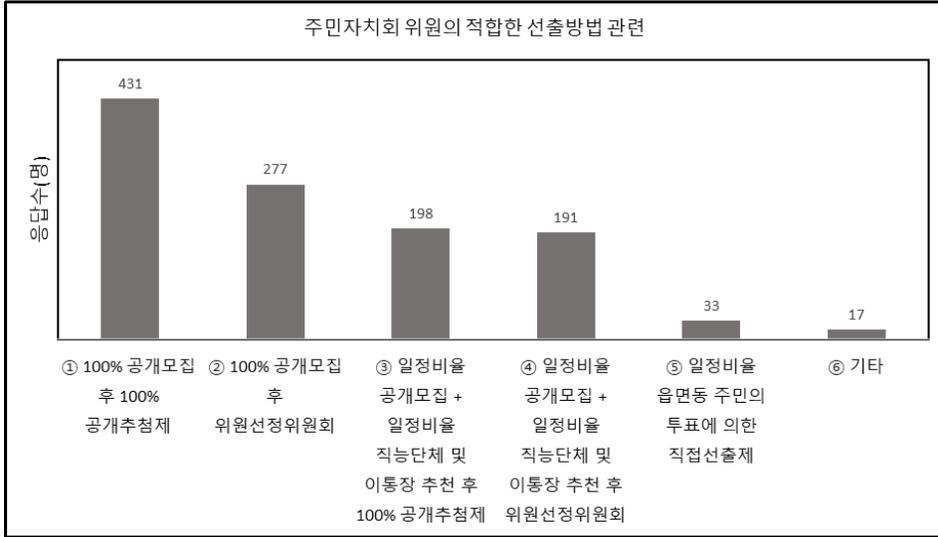
- [문항8]의 ‘주민자치회 구성원 선출의 민주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5.7%인 6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17.1%인 196명은 보통정도, 77.2%인 88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9]의 ‘주민자치회 구성시 추천제의 대표성 확보’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9.4%인 222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9%인 333명은 보통정도, 51.6%인 592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10]의 ‘주민자치회 구성시 사전(사후)교육이수제의 효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8.8%인 101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1.5%인 247명은 보통정도, 69.7%인 799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11]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6%인 87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18.6%인 214명은 보통정도, 73.8%인 846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12]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정도’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35.7%인 410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6.3%인 416명은 보통정도, 28%인 321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13]의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확보 정도’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39.8%인 45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8.9%인 446명은 보통정도, 21.3%인 24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14]의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6%인 133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8.9%인 331명은 보통정도, 59.5%인 683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종합하면, ‘주민자치회 구성원 선출의 민주성’ 긍정 77.15%, 부정 5.75%, ‘주민자치회 구성시 사전(사후)교육이수제의 효용성’ 긍정 69.66%, 부정 10.8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마을 발전 정도’ 긍정 66.93%, 부정 8.81%,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긍정 73.76%, 부정 7.59%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분야인 반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

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정도’는 긍정 27.98%, 부정 35.75%로 나타나고, 또한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확보 정도’에 있어서도 긍정 21.36%, 부정 39.76%로 나타나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항15]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선출방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37.58%인 431명은 100% 공개모집 후 100% 공개추첨제 방식에, 24.15%인 277명은 100%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에 응답함으로써 100% 공개모집 방식을 선호함
- 또한, 응답자 1,147명 중 17.26%인 198명은 일정비율 공개모집과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후 100% 공개추첨제 방식에, 16.65%인 191명은 일정비율 공개모집과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후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에, 2.88%인 33명은 일정비율 읍면동 주민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출제 방식에, 1.48%인 17명은 기타에 각각 응답함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선출방법 관련 [문항15]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① 100% 공개모집→ 100% 공개추첨제 선정 방식	431	37.58
② 100%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277	24.15
③ 일정비율 공개모집 +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 100% 공개추첨제 방식 선정	198	17.26
④ 일정비율 공개모집 +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191	16.65
⑤ 일정비율 읍면동 주민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출제 방식	33	2.88
⑥ 기타	17	1.48
계	1,14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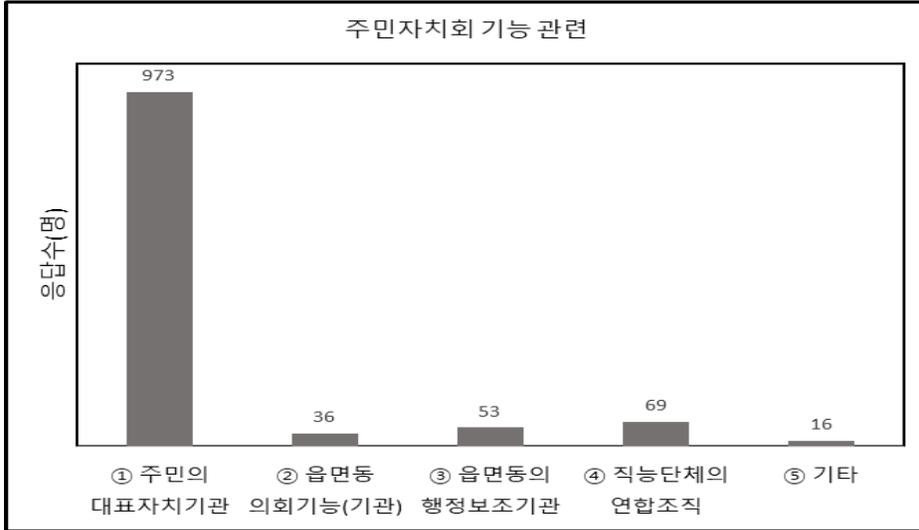
[그림 3-5]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선출방법



□ 주민자치회의 위상 및 개선방안

주민자치회 기능 관련 [문항 16]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① 주민의 대표자치기관	973	84.83
② 읍면동 의회기능(기관)	36	3.14
③ 읍면동의 행정보조기관	53	4.62
④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69	6.02
⑤ 기타	16	1.39
계	1,1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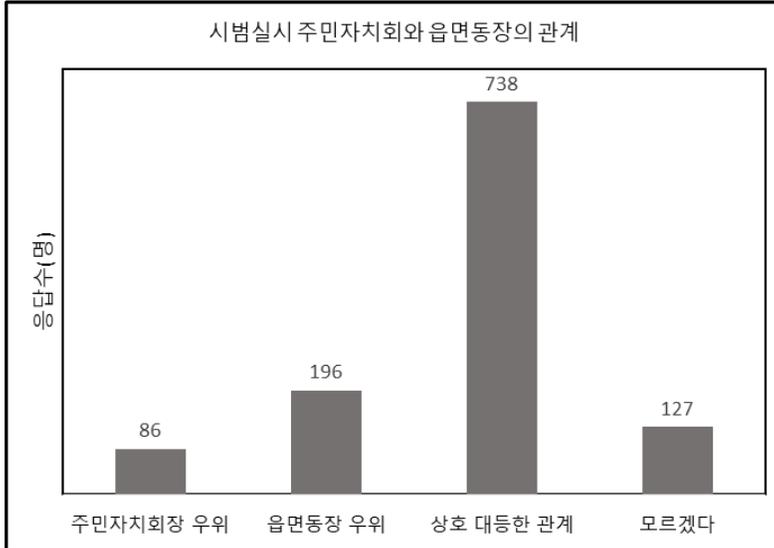
[그림 3-6] 주민자치회의 기능



○ [문항16]의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인식'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84.83%인 973명은 주민의 대표자치기관에, 3.14%인 36명은 읍면동 의회기능(기관)에, 4.62%인 53명은 읍면동의 행정보조기관에, 6.02%인 69명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에, 1.39%인 16명은 기타에 각각 응답함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 관련 [문항 17]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주민자치회장 우위	86	7.50
읍면동장 우위	196	17.09
상호 대등한 관계	738	64.34
모르겠다	127	11.07
계	1,1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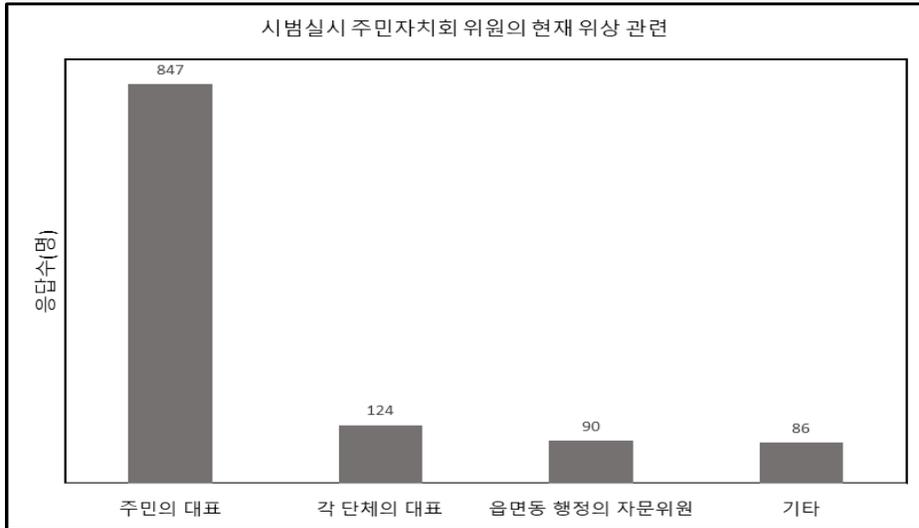
[그림 3-7]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



- [문항17]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5%인 86명은 주민자치회장 우위에, 17.09%인 196명은 읍면동장 우위에, 64.34%인 738명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 11.07%인 127명은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함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 관련 [문항 18]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주민의 대표	847	73.84
각 단체의 대표	124	10.81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	90	7.85
기타	86	7.5
계	1,1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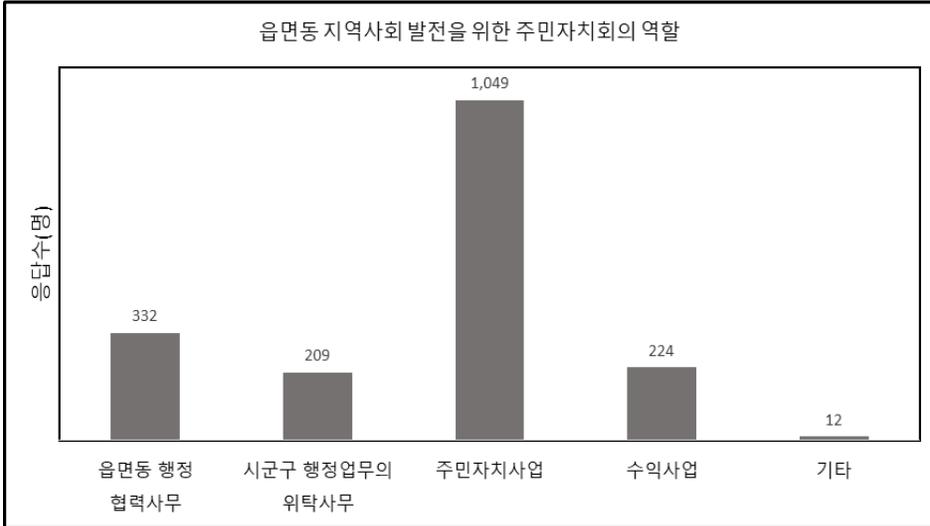
[그림 3-8]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



- [문항18]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3.84%인 847명은 주민의 대표에, 10.81%인 124명은 각 단체의 대표에, 7.85%인 90명은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에, 7.5%인 86명은 기타에 각각 응답함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관련 [문항 19]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읍면동 행정 협력사무	332	28.95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209	18.22
주민자치사업	1,049	91.46
수익사업	224	19.53
기타	12	1.05
계	1,826	159.21

[그림 3-9]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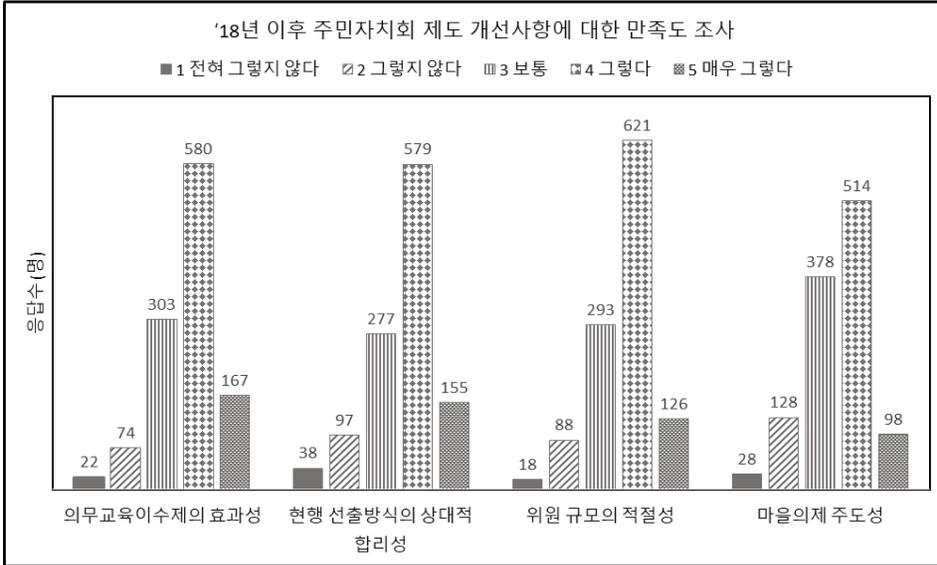


- [문항19]의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의 응답수 1,826개 중 28.95%인 332명은 읍면동 행정 협력사무에, 18.22%인 209명은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에, 91.46%인 1049명은 주민자치사업에, 19.53%인 224명은 수익사업에, 1.05%인 12명은 기타에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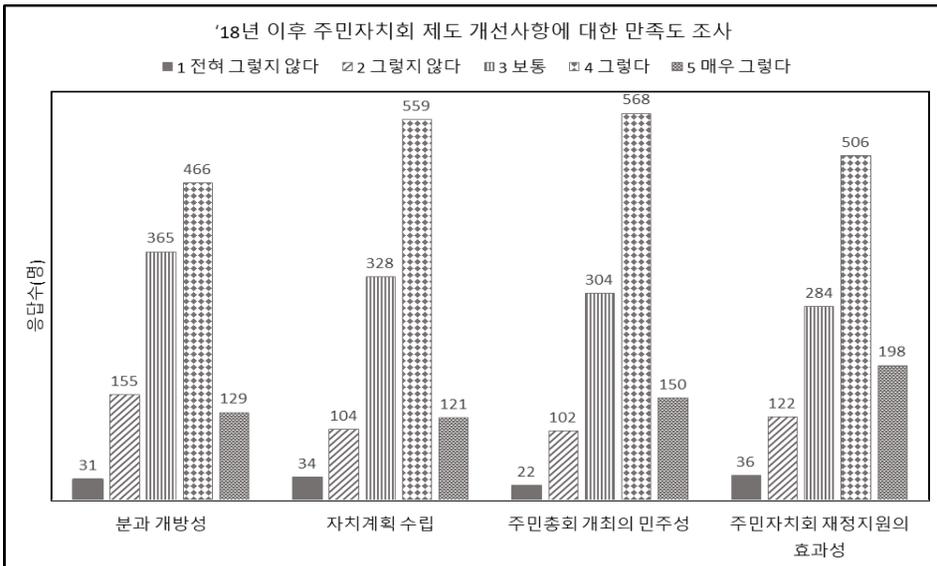
□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번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수(N=1,147)				
				1	2	3	4	5
20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적 사전(사후)교육이수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	3.69	0.87	22	74	303	580	167
				1.92%	6.46%	26.44%	50.61%	14.57%
				8.28%		★	65.18%	
21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의 현행방식(공개모집+공개추천제)은 이전(제한적 공모+단체추천)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다.	3.62	0.93	38	97	277	579	155
				3.32%	8.46%	24.17%	50.52%	13.53%
				11.78%		★	64.05%	
22	주민자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확대된 위원 정수(통상적 20~50명)는 적절한 수준이다.	3.65	0.83	18	88	293	621	126
				1.57%	7.68%	25.57%	54.19%	10.99%
				9.25%		★	65.18%	
23	읍면동 마을의제 형성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6	0.89	28	128	378	514	98
				2.44%	11.17%	32.98%	44.85%	8.55%
				13.61%		★	53.40%	
24	주민자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의 개방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4	0.95	31	155	365	466	129
				2.71%	13.53%	31.85%	40.66%	11.26%
				16.24%		★	51.92%	
25	자치(마을)계획이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3.55	0.90	34	104	328	559	121
				2.97%	9.08%	28.62%	48.78%	10.56%
				12.05%		★	59.34%	
26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개최되고 있다.	3.63	0.89	22	102	304	568	150
				1.92%	8.90%	26.53%	49.56%	13.09%
				10.82%		★	62.65%	
27	지자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활용한 주민자치회 재정지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3.62	0.95	36	122	284	506	198
				3.14%	10.65%	24.78%	44.15%	17.28%
				13.79%		★	61.43%	
2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주민자치회와 잘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주민자치회 의견이 잘 반영된다).	3.31	0.96	48	159	414	436	89
				4.19%	13.87%	36.13%	38.05%	7.77%
				18.06%		★	45.82%	
29	읍면동장 시민주천제와 개방형직위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3.37	0.82	57	112	433	434	110
				4.97%	9.77%	37.78%	37.87%	9.60%
				14.74%		★	47.47%	
30	위의 '18년 이후 제도개선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3.56	0.84	17	91	368	568	102
				1.48%	7.94%	32.11%	49.56%	8.90%
				9.42%		★	5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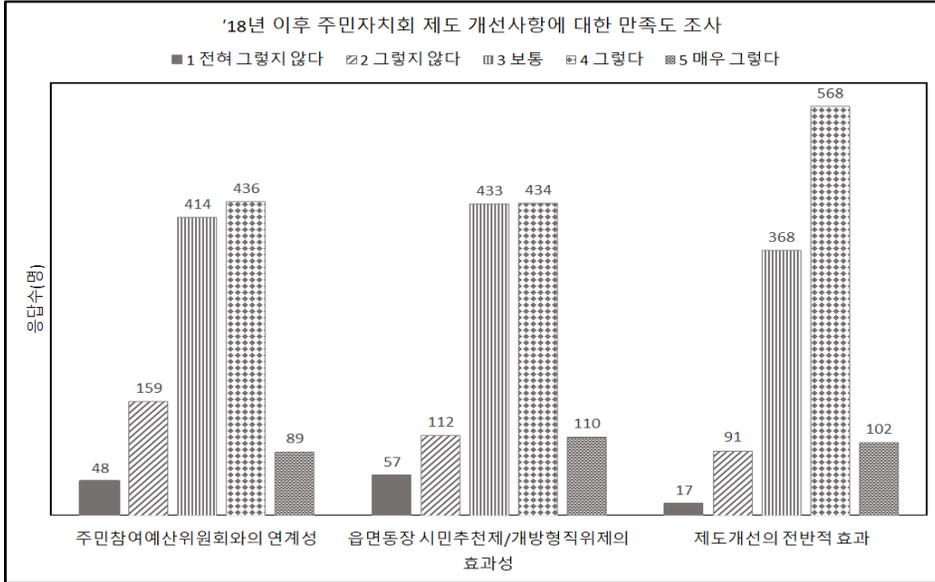
[그림 3-10]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1)



[그림 3-11]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2)



[그림 3-12]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3)



- [문항20]의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의 효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8.28%인 9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6.44%인 303명은 보통 정도, 65.18%인 747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1]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공개모집+공개추첨제)의 합리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78%인 135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4.17%인 277명은 보통정도, 64.05%인 734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2]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적절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9.25%인 10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5.57%인 293명은 보통정도, 65.18%인 747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3]의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의제 형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3.61%인 15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2.98%인 378명은 보통정도, 53.4%인 612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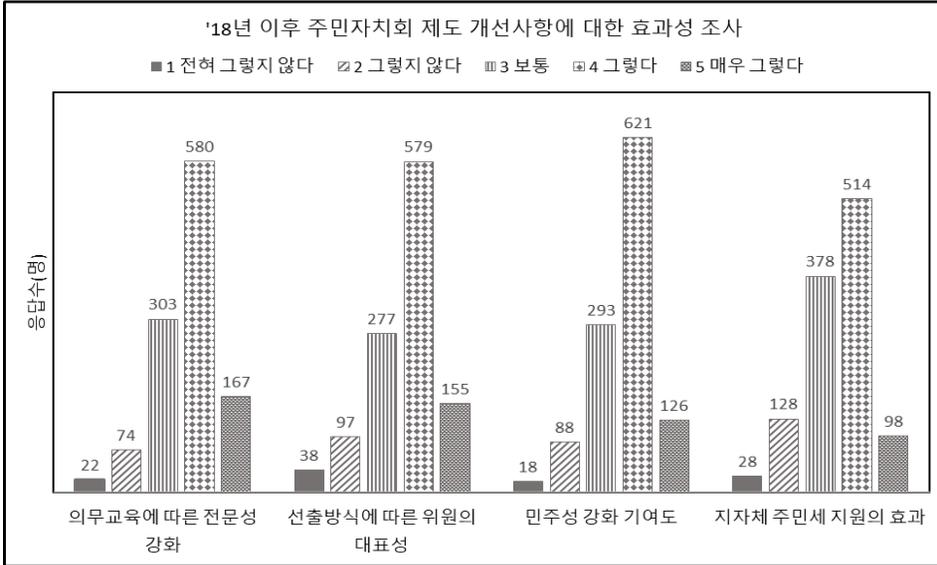
- [문항24]의 '분과위원회에 주민참여의 개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6.24%인 18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1.85%인 365명은 보통정도, 51.92%인 59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5]의 '주민자치회에서 자치(마을)계획 수립의 계획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2.05%인 13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8.62%인 328명은 보통정도, 59.34%인 68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6]의 '주민총회 개최의 주민참여와 합의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0.82%인 124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6.5%인 304명은 보통정도, 62.65%인 718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7]의 '지자체의 주민세 지원의 효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3.79%인 15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4.78%인 284명은 보통정도, 61.43%인 704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8]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8.06%인 207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6.13%인 414명은 보통정도, 45.82%인 52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29]의 '시민추천제 및 개방형직위제의 효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4.74%인 169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7.78%인 433명은 보통정도, 47.47%인 544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0]의 '18년 이후 제도개선 사항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9.42%인 10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2.11%인 368명은 보통정도, 58.46%인 67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종합하면, '18년 이후의 주민자치회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의 효용성'여부,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공개모집+공개추천제)의 합리성'여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적절성'여부의 분야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주민총회 개최의 주민참여와 합의성’ 여부, ‘지자체의 주민세 지원의 효용성’ 여부의 분야도 60%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여부는 긍정적 인식이 50%를 넘지 않게 나타났으며, [문항30]의 ‘18년 이후 제도개선 사항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8.46%를 보여,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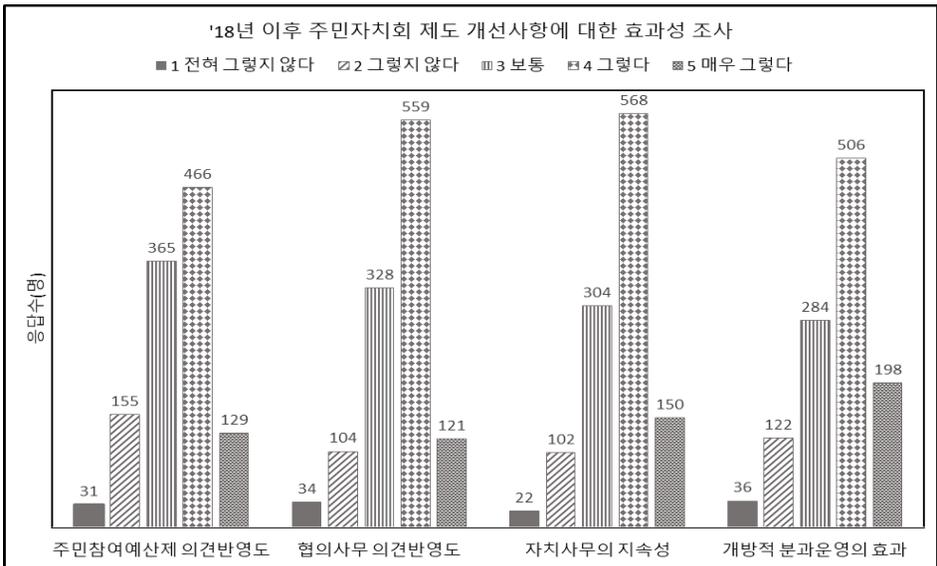
□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조사

연번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N=1,147)				
				1	2	3	4	5
31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적 사전(사후)교육이수제는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3.71	0.84	22	63	298	605	159
				1.92%	5.49%	25.98%	52.75%	13.86%
				7.41%		★	66.61%	
32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의 현행방식(공개모집+공개추첨제)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3.60	0.92	37	97	298	572	143
				3.23%	8.46%	25.98%	49.87%	12.47%
				11.69%		★	62.34%	
33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의 개최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민주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3.77	0.78	15	53	264	665	150
				1.31%	4.62%	23.02%	57.98%	13.08%
				5.93%		★	71.06%	
34	지자체 주민세 상당액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재정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3.67	0.94	28	107	275	546	191
				2.44%	9.33%	23.98%	47.60%	16.65%
				11.77%		★	64.25%	
35	주민자치회(주민)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3.45	0.92	34	129	384	488	112
				2.96%	11.25%	33.48%	42.55%	9.76%
				14.21%		★	52.31%	
36	주민자치회의 협의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자치회(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3.53	0.88	25	102	390	502	128
				2.18%	8.89%	34.00%	43.77%	11.16%
				11.07%		★	54.93%	
37	우리동네 주민자치회의 자치사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3.71	0.88	21	92	261	599	174
				1.83%	8.02%	22.76%	52.22%	15.17%
				9.85%		★	67.39%	
38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의 일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분과의 개방적 운영은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3.67	0.84	15	86	310	590	146
				1.31%	7.50%	27.03%	51.44%	12.73%
				8.81%		★	64.17%	

[그림 3-13]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1)



[그림 3-14]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2)



- [문항31]의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의 전문성 강화의 효과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41%인 85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5.98%인 298명은 보통 정도, 66.61%인 903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2]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공개모집+공개추천제)의 유용성’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69%인 134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5.98%인 298명은 보통정도, 62.34%인 71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3]의 ‘자치계획과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에 도움’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5.93%인 6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3.02%인 264명은 보통정도, 71.06%인 815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4]의 ‘주민세 지원의 주민자치회 재정력 강화 도움’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77%인 135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3.98%인 275명은 보통정도, 64.25%인 737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5]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자치회 의견 반영’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4.21%인 163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3.48%인 384명은 보통정도, 52.31%인 60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6]의 ‘협의사무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의견 반영’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07%인 127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4.0%인 390명은 보통정도, 54.93%인 63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7]의 ‘자치사무의 지속성 가지고 추진중’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9.85%인 113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2.76%인 261명은 보통정도, 67.39%인 773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38]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개방성 운영이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도움’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8.81%인 101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7.03%인 310명은 보통정도, 64.17%인 736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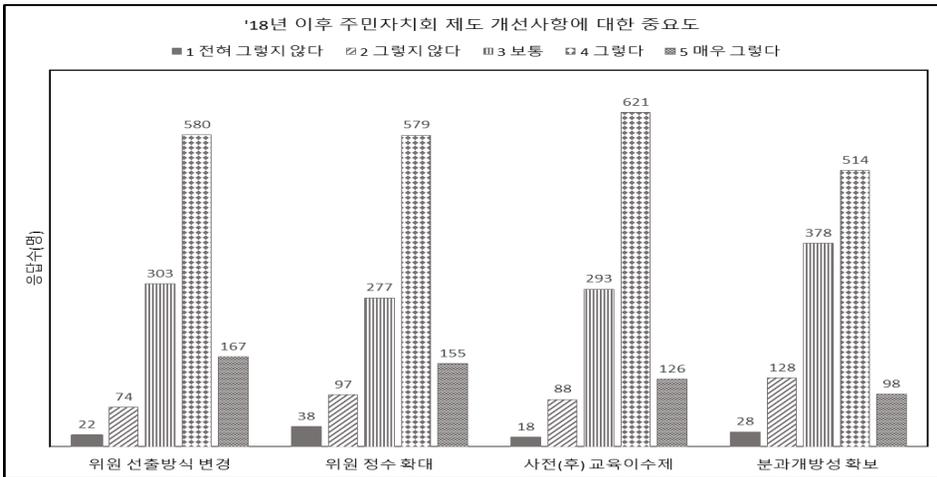
- 종합하면,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의 전문성 강화의 효과성’ 긍정 66.61%, 부정 7.41%, ‘자치계획과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에 도움’ 긍정 71.06%, 부정 9.85%로 나타나, 사전교육 이수제와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의 긍정적 인식과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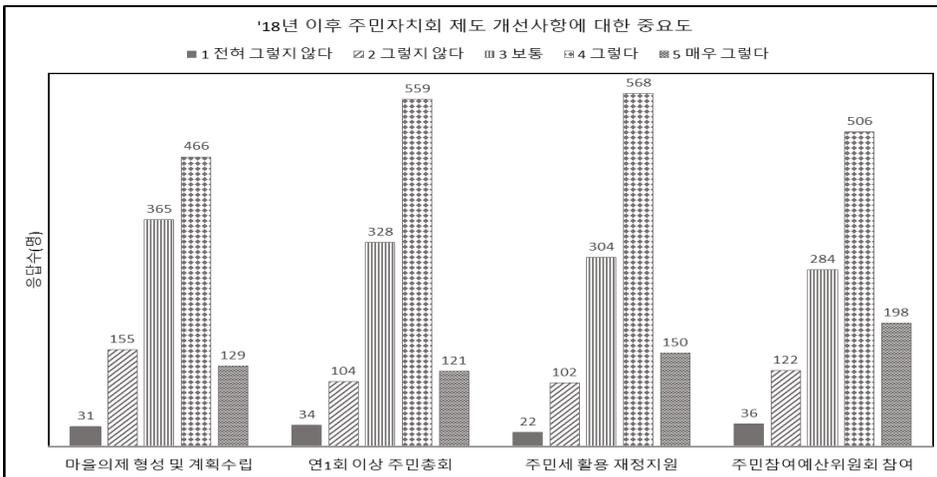
연번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N=1,147)				
				1	2	3	4	5
39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의 변경(공개모집+공개추천제)	3.64	0.92	37	80	309	554	167
				3.23%	6.97%	26.94%	48.30%	14.56%
				10.2%		★	63.86%	
40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	3.26	0.94	51	157	463	393	83
				4.45%	13.69%	40.37%	34.26%	7.24%
				18.14%		★	41.5%	
41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전(사후)교육이수제	3.77	0.83	16	58	282	607	184
				1.39%	5.06%	24.59%	52.92%	16.04%
				6.45%		★	68.96%	
42	분과위원회의 주민참여 개방성 확보	3.68	0.85	20	62	346	556	163
				1.74%	5.41%	30.17%	48.47%	14.21%
				7.15%		★	62.68%	
43	마을의제 형성과 자치(마을)계획 수립	3.76	0.81	17	41	317	593	179
				1.48%	3.57%	27.64%	51.70%	15.61%
				5.05%		★	67.31%	
44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시행	3.83	0.84	22	48	235	635	207
				1.92%	4.18%	20.49%	55.36%	18.05%
				6.1%		★	73.41%	
45	주민세(개인균등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재정 지원	3.63	0.98	40	92	325	483	207
				3.49%	8.02%	28.33%	42.11%	18.05%
				11.51%		★	60.16%	
46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3.59	0.81	32	89	350	524	152
				2.79%	7.76%	30.51%	45.68%	13.25%
				10.55%		★	58.93%	
47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 개방형직위제 도입	3.38	1.01	63	133	387	437	127
				5.49%	11.60%	33.74%	38.10%	11.07%
				17.09%		★	49.17%	
48	시군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정책추진의지(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3.55	0.88	26	80	415	485	141
				2.27%	6.97%	36.18%	42.28%	12.29%
				9.24%		★	54.57%	
49	읍면동장의 주민자치회 지원의 적극성	3.67	0.89	22	76	347	519	183
				1.92%	6.63%	30.25%	45.25%	15.95%
				8.55%		★	61.2%	

- [문항39]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의 변경(공개모집+공개추천제)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0.2%인 117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6.94%인 309명은 보통정도, 63.86%인 721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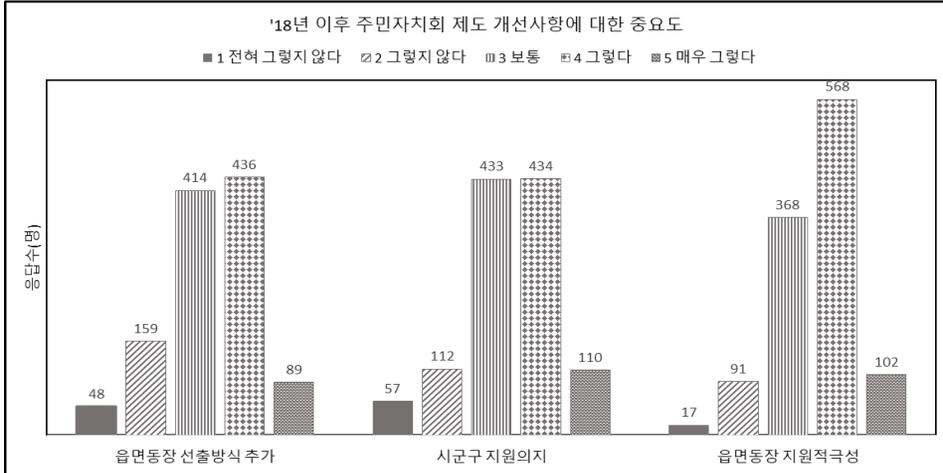
[그림 3-15]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1)



[그림 3-16]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2)



[그림 3-17]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3)



- [문항40]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8.14%인 20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40.37%인 463명은 보통정도, 41.5%인 476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1]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전(사후)교육이수제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6.45%인 74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4.59%인 282명은 보통정도, 68.96%인 791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2]의 ‘분과위원회의 주민참여 개방성 확보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7.15%인 82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0.17%인 346명은 보통정도, 62.68%인 719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3]의 ‘마을의제 형성과 자치(마을)계획 수립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5.05%인 5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7.64%인 317명은 보통정도, 67.31%인 772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4]의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시행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6.1%인 70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0.49%인 235명은 보통정도, 73.41%인 842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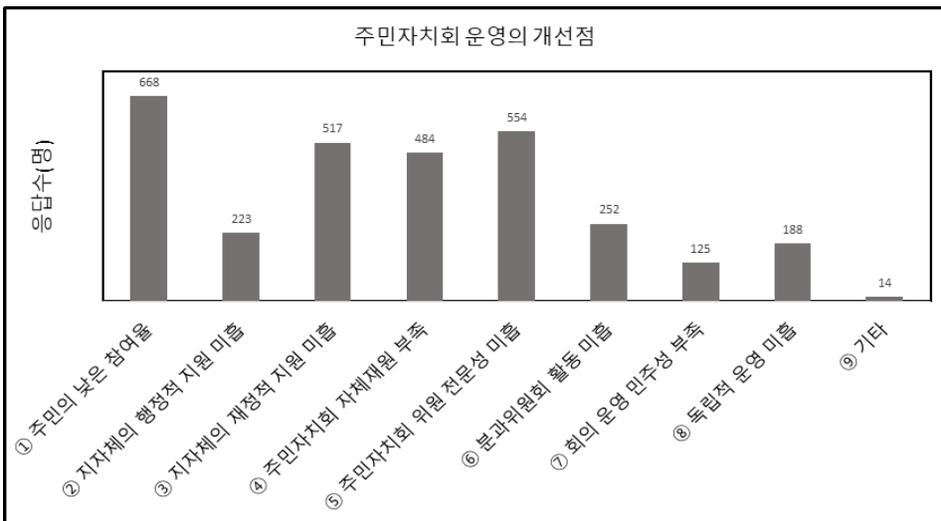
- [문항45]의 ‘주민세(개인균등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재정 지원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1.51%인 132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28.33%인 325명은 보통정도, 60.16%인 690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6]의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0.55%인 121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0.51%인 350명은 보통정도, 58.93%인 676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7]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개방형직위제 도입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17.09%인 19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3.74%인 387명은 보통정도, 49.17%인 564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8]의 ‘시군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정책추진의지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9.24%인 106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6.18%인 415명은 보통정도, 54.57%인 626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문항49]의 ‘읍면동장의 주민자치회 지원의 적극성의 중요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147명 중 8.55%인 98명은 그렇지 않은 편에, 30.25%인 347명은 보통정도, 61.2%인 702명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함
- 종합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전(사후)교육이수제의 중요도’ 긍정 68.96%, 부정 6.45%, ‘마을의제 형성과 자치(마을)계획 수립의 중요도’ 긍정 67.31%, 부정 5.05%,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시행의 중요도’ 긍정 73.41%, 부정 6.1%로 나타나, 효과성 뿐 아니라, 중요도에서도 사전교육 이수제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제도 개선사항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됨

□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인식도 등

[표 3-2]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 관련 [문항 50]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① 주민의 낮은 참여율	668	22.08
②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미흡	223	7.37
③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미흡	517	17.09
④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부족	484	16.02
⑤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성 미흡	554	18.31
⑥ 분과위원회 활동 미흡	252	8.33
⑦ 회의 운영 민주성 부족	125	4.13
⑧ 독립적 운영 미흡	188	6.21
⑨ 기타	14	0.46
계	3,025	100

[그림 3-18]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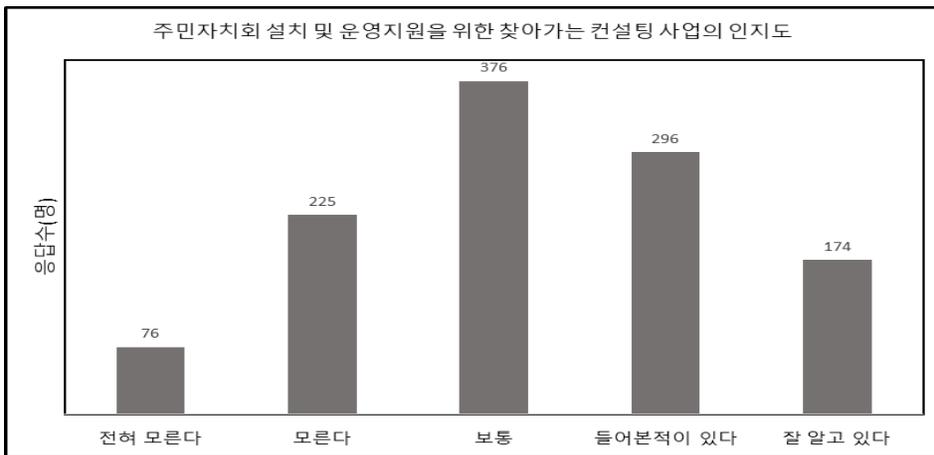


- 한편 [문항50]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약 22%인 668명이 주민의 낮은 참여율을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18%인 554명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미흡을, 17%인 517명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미흡, 16%인 484명은 주민자치회의 자체 재원 부족을 꼽았음
- 반면에 회의 운영 민주성의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4%인 125명에 불과하여 가장 적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6%인 188명이 독립적 운영 미흡을 꼽아 다른 항목에 비해 개선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3-3]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 관련 [문항 51]					
세부문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들어본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응답수	76	225	376	296	174
비율(%)	6.63	19.62	32.78	25.81	15.17
평균	3.23				
표준편차	1.13				

[그림 3-19]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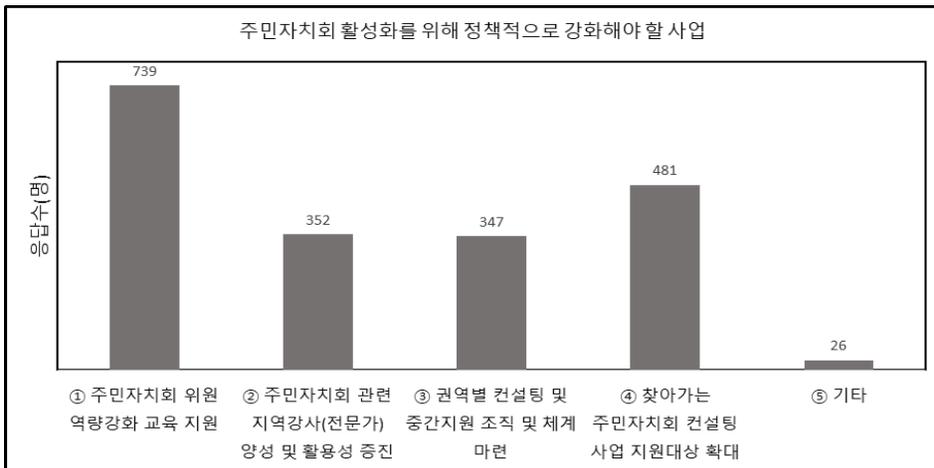


- 또한 [문항51]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혀 모른다가 6.6%인 76명, 모른다가 19.6%인 225명, 보통이 32.8%인 376명, 들어본적이 있다가 25.8%인 296명, 잘 알고있다가 15.2%인 174명으로 각각 응답하였음
- 잘 모르는 편에 속하는 응답이 26.3%, 보통이 32.8%, 알고 있는 편에 속하는 응답이 40.9%, 응답 평균 3.23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인지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관련 [문항 51] 의 세부문항	응답수	비율(%)
①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739	37.99
② 주민자치회 관련 지역강사(전문가) 양성 및 활용성 증진	352	18.10
③ 권역별 컨설팅 및 중간지원 조직 및 체계 마련	347	17.84
④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확대	481	24.73
⑤ 기타	26	1.34

[그림 3-20]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 [문항52]의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과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확대”가 각각 37.9%, 24.7%의 응답을 보였으며, “주민자치회 관련 지역강사(전문가) 양성 및 활용성 증진”, “권역별 컨설팅 및 중간지원 조직 및 체계 마련”은 각각 18% 수준으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임

3. 선행연구와의 인식도 비교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7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의 설문조사를 일부 인용하여 진행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을 '17년 이전과 이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함
-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실제로 마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설문응답자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인식의 변화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2017년의 연구와는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고, 당시에는 응답의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비교분석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는 참고적인 분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표 3-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도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도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평균	평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4.01	3.53	+0.48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3.82	3.44	+0.38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사회(마을)가 많이 발전되었다	3.53	3.40	+0.13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3.44	3.30	+0.14

- 주민자치회의 인식도에 대해서는 2020년 조사에서 2017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 평균 3.53에서 4.01로 0.48포인트 증가하여 “보통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수준”에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 3-6] 주민자치회 이후 달라진 점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 이후 달라진 점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응답비율 (N=1147)	응답비율 (N=697)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44.20%	29.56%	+14.64%
마을의 안전	11.07%	12.91%	-1.84%
생활환경 개선	33.39%	8.75%	+24.64%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21.19%	17.65%	+3.54%
행정과의 소통	39.41%	20.09%	+19.32%
마을공동체 활동	36.27%	14.63%	+21.64%
마을축제	27.03%	20.80%	+6.23%
프로그램(강좌)	23.19%	27.12%	-3.93%
기타	3.23%	0.57%	+2.66%

- 주민자치회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2020년 응답에서 2017년 응답 대비 응답비율이 20%이상 상승한 항목은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이며, 10%이상 상승한 항목은 행정과의 소통,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마을의 안전이나 강좌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소폭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해당 항목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7] 주민자치회의 성격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의 성격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응답비율 (N=1147)	응답비율 (N=697)	
시군구의 행정보조기관	4.62%	4.16%	-11.74%
읍면동의 행정보조기관		12.20%	
읍면동 의회기능	3.14%	-	+3.14%
주민대표의 자치기관	84.83%	77.33%	+7.50%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6.02%	6.17%	-0.15%

-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2020년 응답에서 2017년 응답 대비 뚜렷하게 상승한 항목은 주민대표의 자치기관 항목임.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3-8】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응답비율 (N=1147)	응답비율 (N=697)	
읍면동장 우위	17.09%	13.77%	+3.32%
주민자치회장 우위	7.50%	7.03%	+0.47%
상호 대등한 관계	64.34%	62.98%	+1.36%
잘 모름	11.07%	15.64%	-4.57%

-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32% 소폭 증가하였는데,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 증가하고, 2017년과 2020년 모두 60%이상의 응답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응답하였음

【표 3-9】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비교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응답비율 (N=1147)	응답비율 (N=697)	
주민의 대표	73.84%	65.42%	+8.42%
각 단체의 대표	10.81%	16.50%	-5.69%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	7.85%	11.19%	-3.34%
기 타	7.50%	6.03%	+1.47%

-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7년에도 주민의 대표로 응답한 비율이 65%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그보다 8%이상 상승한 73.8%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진행될수록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나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의 성격보다는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의 주민대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10]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비교(2017년, 2020년)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2020년	2017년	2017년 대비
	응답비율 (N=1147)	응답비율 (N=697)	
읍면동 행정 협력사무	28.95%	36.30%	-7.35%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18.22%	33.72%	-15.50%
주민자치사업	91.46%	80.92%	+10.54%
수익사업	19.53%	18.22%	+1.31%
기타	1.05%	1.87%	-0.82%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 중 협력사무에 대한 응답이 2017년에는 36.3%, 2020년에는 28.95%, 위탁사무에 대한 응답은 2017년에는 33.72%, 2020년에는 18.22%로 상당히 감소한 반면,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응답은 2017년 80.92%에서 2020년 91.46%로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구나 읍면동과의 협력사무나 위탁사무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제4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 평가

제1절 성과 평가 조사의 개요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 평가 및 분석

제4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 평가

KRILA

제1절

성과 평가 조사의 개요

1. 성과평가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19년 4월 기준 214개 시범 실시 읍면동 지역
 - 주민자치 담당 읍면동 공무원
- 샘플크기: '19년 4월 기준 214개 읍면동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부록2 참조) 작성
- 조사 기간: 2020. 6. 1 ~ 7. 20.(50일간)
- 조사 응답 및 분석 : 전체 214개 대상 읍면동중 42개 읍면동 무응답, 행안부 시범실시 승인 후 주민자치회 미설치('19.12월 기준) 32개 읍면동 제외 하여 유효 응답 140개 읍면동 대상으로 분석

2. 성과평가 조사 내용

- 다음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회 해당 읍면동 현황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재정, 주민자치회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조례 등 제정			해당 읍·면·동
조례제정	135	한시조례	15
		시범 읍면동 한정	56
규칙제정	45	한시조례	4
		시범 읍면동 한정	12

-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135개(96.4%)는 조례제정을 완료함
 - 조례의 효력이 시범 읍면동에만 미치는 시군구는 56개임
 - 시범사업 기간까지의 한시 조례는 15개임
- 조례의 하위 단위인 규칙을 제정한 읍면동은 45개임
 - 조례의 효력이 시범 읍면동에만 미치는 시군구는 12개임
 - 시범사업 기간까지의 한시 조례는 4개임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중간값
분과위원회 갯수	9	2	4.08	4
분과위원회 총원(명)	105	16	41.08	34.5
분과위원회 위원 참여 수(명)	61	11	32.64	30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율	22.5%			
분과위원회 연평균 개최건수	108	2	34.80	36

-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은 분과위원회 개수, 총원, 위원 참여수, 분과위원회 연평균 개최건수의 사항이 조사되었음
- 분과위원회는 읍면동 별로 최소 2개에서 최대 9개의 분과위원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총원은 최소 16명에서 최대 105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읍면동의 분과위원회 총원 평균은 41.08명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값은 34.5명으로 나타남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11명에서 최대 61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0명 가량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과위원회의 주민참여율은 22.5%로 나타남
- 분과위원회 연평균 개최건수는 최소 2건에서 최대 108건으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34건 정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월 3회정도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선정

구 분	해당	비해당	무응답
위원공개모집	134	0	6
위원선정 추천제	102	32	6

-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을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에서 134개(95.7%) 읍면동이며 6개(4.3%)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추천제를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102개(72.9%)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32개(22.9%), 6개(4.3%)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비

구 분	표준조례 기준 충족 (특정성비 60%이하)	표준조례 기준 미충족 (특정성비 60%초과)		무응답	
		여성이 60%초과	남성이 60%초과		
개소	62	63	28	35	15

- 표준조례상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비(특정성비가 60% 이하)를 충족하는 읍면동은 140개 읍면동 중 62개(44.3%)였으며, 표준조례 기준을 미충족하는 읍면동은 63개(45.0%)으로 나타났고, 15개(10.7%) 읍면동은 무응답하였음
- 표준조례 기준을 미충족하는 읍면동 중 28개(20.0%)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였고, 35개(25.0%)는 남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였음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회적약자 참여

구 분	해당	비해당	무응답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회적약자 참여	15	114	10	1

- 표준조례 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회적약자(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구성원 등)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0개 읍면동 중 15개(10.7%) 읍면동에서 사회적약자를 위원으로 참여중 이었고, 114개(81.4%) 읍면동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음
- 10개(7.2%)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회적약자 참여에 대해 무응답했으며, 1개소(0.7%) 에서는 사회적약자의 위원 참여를 구성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구 분	해당	비해당	무응답
자치계획 수립	117	16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	119	15	6
분과위원회 일반주민 참여	89	45	6
자체운영세칙 or 자체규약 제정	117	5	18

-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117개(83.6%)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16개(11.4%), 7개(5.0%)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을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119개(85.0%)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15개(10.7%), 6개(4.3%)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자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89개(63.6%)이며, 운영하지 않는 읍면동은 45개(32.1%), 6개(4.3%)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자치회의 자체 운영세칙 또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117개(83.6%)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5개(3.6%), 18개(12.9%) 읍면동은 무응답 하였음

구 분	안함	개최함		무응답
		연 1~2회	연 3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빈도	20 (14.3%)	94 (67.2%)		26 (18.5%)
		83 (59.3%)	11 (7.9%)	

-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읍면동은 전체 140개 읍면동 중 94개(67.2%)로 나타났으며, 개최하지 않는 읍면동은 20개(14.3%)로 나타났음. 무응답한 지자체는 26개(18.5%)로 나타났음
-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읍면동 중에서 연 1~2회 개최하는 읍면동은 83곳(59.3%)으로 나타났으며, 11곳(7.9%)은 연 3회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10명 미만	11~50명	51명 이상	무응답
인구 1,000명 당 주민총회 참여자 수	43	37	10	50

- 주민총회의 연간 참여자 수는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보다는 읍면동의 인구와 비례한 주민총회 참여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파악에 보다 용이할 것임
- 따라서 인구 1,000명당 주민총회 연간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10명미만인 읍면동은 43곳(30.7%), 11~50명인 읍면동은 37곳(26.4%), 51명 이상인 읍면동은 10곳(7.2%)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50곳(35.7%)으로 나타남

주민자치회 재원

구 분	해당	비해당	무응답
주민세 상당액 지원	26	105	9
주민참여예산 연계	44	88	8

-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주민세 상당액의 지원을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26개(18.6%)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105개(75.0%), 9개 읍면동(6.4%)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읍면동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44개(31.4%)이며, 시행하지 않는 읍면동은 88개(62.9%), 8개 읍면동(5.7%)은 무응답 하였음

□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수 및 유관기관 수

구 분	최대	최소	평균(명, 개소)
전담공무원 수	18	0	2.89
유관기관 수	47	1	4.9

-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배치된 경우, 전담공무원 수는 지자체당 평균 2.89명이며, 최대 18명에서 전담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 한편, 주민자치회의 유관기관 수는 평균 4.9개로 나타났으며, 최소 1곳에서 가장 많은 읍면동의 경우 47개로 나타났음

□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정원, 지원자, 선정자 등

구분		140개 읍면동 평균
임기		2 (1년: 2, 2년: 128, 3년: 1, 4년: 1, 무응답: 8)
조례상 정원		45.0
지원자		51.82
공개모집 지원자		45.40
선정자		42.60
현원		35.30
성별	남성	17.75
	여성	17.55
성비(남성/여성)		101.13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대체로 2년이며, 최소 1년에서 4년까지인데, 140개 읍면동 가운데 2년의 임기를 채택하는 곳은 128곳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조례상 정원은 대체로 30~50명 수준이었으며, 최소 25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정원을 정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지원하는 지원자는 140개 읍면동 평균 51.82명이며, 이중 선정자는 42.60명으로 평균 1.21:1의 경쟁률이라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 현원 평균은 선정자보다 적은 35.30명으로 중도 사퇴자 등이 감소의 원인으로 보임
- 주민자치위원의 성비는 101.13으로 남성이 약간 많은 수준을 보였으나,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하는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전국적 평균값으로는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 회장의 선출 등

구분	개소	비율
위원 선거	71	50.71%
위원 호선후대	64	45.71%
시군구청장 추천	-	-
읍면동장 추천	-	-
기타/무응답	5	3.57%

- 주민자치회 회장의 선출은 응답한 140개 읍면동 중 50.7%인 71개 읍면동에서 위원 선거를 실시 중이며, 45.7%인 64개소에서는 위원 호선 후대를 실시 중이고, 기타/무응답은 5개소로 나타남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구성 및 유급사무원

구분	개소	비율
독자적 사무국 구성	69	49.3%
읍면동사무소 대행	30	21.4%
없음	32	22.9%
무응답	9	6.4%

- 사무국 등 실무조직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독자적 사무국을 구성한 지자체 읍면동이 69개소로 49.3%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읍면동사무소에 대항하고 있는 지자체가 30개소, 21.4%의 비율, 없거나 무응답한 지자체는 41개소 29.3%의 비율을 차지하였음

구분	개소	비율
유급사무원 채용 안함	112	80.0%
유급사무원 채용	17	12.1%
없음	1	0.7%
무응답	10	7.2%

- 사무국이 있는 경우 유급사무원을 채용한 경우는 17개소로 전체의 12.1%의 비율로 미미하고 유급사무원이 채용이 없는 경우는 112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회계 및 재정관리

구분	개소	비율
읍면동장 혹은 담당공무원	23	16.4%
주민자치회장	11	7.9%
주민자치회 간사, 사무국	108	77.1%
기타 및 무응답	5	3.6%

-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재정관리자는 주민자치회의 간사 또는 사무국이 77.1%로 총 108개 읍면동에서 시행중이고, 읍면동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지자체는 23개소, 주민자치회장이 담당하는 읍면동은 11개소로 나타났음

구분	개소	비율
회의 등에서 단순한 보고 수준	24	17.1%
관계공무원 관리	25	17.9%
주민자치회내 별도의 감사가 담당 및 수행	100	71.4%
기타 및 무응답	2	1.4%

- 주민자치의 회계관련 감사 및 모니터링은 별도의 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71.4%로 100개소에서 시행중이고, 단순 보고 수준, 관계공무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약 17%로 각각 24개소, 25개소에서 시행중임

□ 주민자치회 사업

구분	안함	1~5개	6~10개	10개 이상	무응답
주민자치회 사업수	3	46	41	17	33

-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는 전체 사업수는 1~5개인 읍면동이 46곳(32.9%), 6~10개인 읍면동이 41곳(29.3%)으로 60%가량의 읍면동에서 1~10개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10개 이상인 읍면동은 17곳(12.1%)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은 3곳(2.1%)이며, 무응답은 33곳(23.6%)로 나타남

구분	안함	위탁사업		무응답
		1~4개	5개 이상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수	76	12	2	50
		14		

-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위탁사업의 수는 1~4개인 읍면동이 12곳(8.6%), 5개 이상인 읍면동이 2곳(1.4%)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읍면동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위탁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은 76곳(54.3%), 무응답은 50곳(35.7%)으로 주민자치회의 위탁사업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민자치회 기금 및 적립금 등의 운용

구분	개소	비율
없음 혹은 단순 통장잔고 관리	82	58.6%
별도 자체기금 운용	45	32.1%
별도 공유재산(부동산) 운용	1	0.7%
자체기금 및 부동산 운용	0	0
기타 및 무응답	2	1.4%

- 주민자치회의 기금과 적립금 및 공동재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8.6%, 82개소에서 없거나 단순한 통장잔고 관리 차원에 그치고 있고, 32.1%인 45개소에서는 별도 자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별도 공유재산(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는 1개소에 불과하였음

주민자치회 홍보방법

홍보방법	해당 읍면동
읍면동 게시판	94
현수막/플래카드	123
시군구 홈페이지	68
읍면동 홈페이지	75
지역신문 공고	21
가구별 안내문 발송	7
온라인 카페 등 SNS	56
문자 등 모바일 발송	28
기타	20
홍보하지 않음	0

- 주민자치회의 홍보방법으로는 읍면동 게시판, 현수막/플래카드, 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이중 현수막/플래카드를 통한 홍보방법이 123곳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동 게시판, 시군구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 SNS를 활용하고 있음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 평가 및 분석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 평가

□ 평가의 개요

- 앞서 수행되고 분석된 인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평가방법은 크게 3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근린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근린자치 기반조성’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군구와 읍면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재정, 교육, 홍보, 조례, 전담공무원, 컨설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및 자원, 사업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출가능한 지표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음
-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일반 주민의 참여도 등 객관적으로 정량화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평가하였음
- 3가지 영역의 평가항목 이외에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측면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주민세 상당분이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곳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지표를 산정하였음
- 위의 세부평가 항목을 개별 평가함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정량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비율로 구분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항목의 여부만 판단하였음

□ 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근린자치 기반조성	행·재정적지원	시·군·구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교육, 컨설팅, 견학
				홍보
			조례내용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제 비율
				자치계획 수립/내용 명시
				주민총회 운영
				분과위원회 개방성
		주민자치회 재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주민자치회 자체교육 컨설팅, 견학	
			주민자치회 자체 홍보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대비 공개모집 지원자(사전교육이수자) 수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유관 주민조직수		
		주민자치회 위원 양성평등 비율(%)		
		주민자치회 사회적약자(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구성원)의 참여 여부		
	운영 및 재원	회의(정기·임시) 개최 정도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여부		
		주민자치회 자체운영세칙		
		자체 회비 및 사업수익금		
		자체회비(수익금) 액수		
사업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 수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건수			
목적달성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주민 참여 정도	주민총회 개최 건수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세 상당분 지원 여부			

□ 평가결과 산출 방법

-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 점수를 배점하고, 조사표의 조사항목과 연계하여, 조사점수를 집계하였으며, 최고점수부터 순서대로 30%내에 드는 읍면동을 “상”그룹, 그 다음에 40%에 드는 읍면동을 “중”그룹, 다음 30%에 드는 읍면동을 “하”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 이때, 상위 30% 또는 중위 40% 인근에서 발생하는 동일 점수는 같은 그룹에 포함시켰으며, 동일 그룹내의 점수를 평균하여 100분위(100점 만점)로 표시하였음

2. 성과 평가 분석결과

□ 근린자치 기반조성

- 각 평가등급은 근린자치 기반조성 중, 지자체별로 정량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비율로 구분하고, 상위 30%, 중위 40% 인근에서 발생하는 동일점수는 같은 그룹에 포함함
 - 그 결과, 그룹별 비율은 “상”그룹 33.6%, “중”그룹 40.6%, “하”그룹 26.4%로 나타남
 - 전체 평가영역별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변환했을 때, “상”그룹은 75점 이상, “중”그룹은 75점 미만 54점 이상, “하”그룹은 54점 미만으로 평가됨
-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3.55점으로 나타났음
 - 세부항목별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은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전용공간(71.79점),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71.43점)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의 홍보로 48.93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견학이 56.43점을 형성함

[표 4-1]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구분	시군구의 재정	시군구의 교육, 컨설팅, 견학	시군구의 홍보	조례 내용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견학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전용공간	전체 평균
“상”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77.30	86.52	80.85	78.87	93.62	77.66	92.55	81.95
“중”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63.69	60.12	40.18	65.36	71.43	55.36	66.52	62.50
“하”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57.66	50.45	21.62	39.10	43.24	31.08	53.38	42.50
전체 100점 환산점수 평균	66.67	66.43	48.93	62.95	71.43	56.43	71.79	63.55

- “상”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47개소(3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81.95점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가 93.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전용공간에 대한 평가 결과(92.55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 반대로 시군구의 재정은 77.30점으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조례 내용(78.87점),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견학(77.66점)으로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중”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56개소로 4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2.50점으로 제시됨
 - 세부항목별로는 “상” 그룹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

- 치가 71.43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전용공간이 66.52점으로 나타남
-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상”그룹과 달리 시군구의 홍보로 40.18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견학(55.36점)이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상”그룹에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던 조례 내용 차원에서는 도리어 65.36점으로 그룹 내에서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하”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42.5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 가운데 37개소(26.4%)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항목별로는 시군구의 재정이 57.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전용공간에 대한 점수가 53.3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 “하”그룹 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항목은 시군구의 홍보로 21.62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 그룹에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평가결과에 걸쳐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과 “하”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시군구의 홍보와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등의 활동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담공무원의 배치나 전용공간의 확보와 같이 제도나 인프라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높은 반면, 홍보 등 자율적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의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 점수의 분포를 보았을 때, 주민자치회 자체 활동보다 시군 차원의 활동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견학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 나온 것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평가집단별로 파악할 때, 그룹에 상관없이 제도설정에 대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그룹의 경우 자율적 사업 내용에 대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그룹이나 “하”그룹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시군구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상,중,하 그룹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구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지원이 격차를 발생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 조례의 세부내용(근린자치 기반조성)

- 한편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의 “조례내용”은 세부적으로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상” 그룹의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87점, “중”그룹은 65.36점, “하”그룹은 39.10점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은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 여부(96.43점), 주민총회 운영 명시(85점), 자치계획 수립 및 내용 명시(83.57점)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25.1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가 62.38점,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가 63.57점으로 나타남
- “상”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78.87점이며, 본 그룹내에서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여부와 자치계획 수립 및 내용명시, 주민총회 운영 명시는 100%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과위원회의 개방성 정도는 87.23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도 79.4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되었으나, 주민자치회 재원은 42.5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이룸

[표 4-2] 조례 내용의 그룹별 평가 결과

구분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 여부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	자치계획 수립 및 내용 명시	주민총회 운영 명시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	주민자치 회 재원	“조례 내용” 평균
“상”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100.00	79.43	100.00	100.00	87.23	42.55	78.87
“중”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98.21	55.36	94.64	96.43	71.43	23.66	65.36
“하” 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89.19	51.35	45.95	48.65	21.62	5.41	39.10
전체 100점 환산점수 평균	96.43	62.38	83.57	85.00	63.57	25.18	62.95

- “중”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65.36점이며, 본 그룹내에서 “상” 그룹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여부와 자치계획 수립 및 내용명시, 주민총회 운영 명시 등에서 각각 98.21점, 94.64점, 96.4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분과위원회의 개방성 정도는 71.43점이며,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는 55.36점, 주민자치회 재원은 23.66점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항목별 “상” 그룹과 “중” 그룹간의 차이가 보여짐
- 마지막으로 “하”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39.10점이며, 본 그룹내 “상” 그룹과 “중”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던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여부는 89.1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유지함
 - 그러나 자치계획 수립 및 내용 명시, 주민총회 운영 명시 항목의 경우 “상” 그룹과 “중” 그룹에서 보였던 높은 점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각각 45.95점

- 과 48.65점으로 낮은 점수대를 보이는데, 이는 위원공개 모집 및 추천제 비율명시의 51.35점 보다도 낮은 점수임
- 이는 “하”그룹에 속하는 30%의 시군구는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낼 필요가 있음
 - 한편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와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에서는 각각 51.35점과 21.62점으로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는 “중” 그룹과의 점수 차이가 불과 4점정도이나,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는 21.6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하” 그룹에서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과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의 개방성은 대부분 조례상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 재원의 경우 “하”그룹은 5.41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례 제개정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안내에 따른 제개정은 매우 충실히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 60~70%의 시군구에서는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조례 반영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제 비율 명시와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조례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상”, “중”, “하” 그룹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하”그룹에 있어서, 분과위원회 개방성은 “중” 그룹과 큰 격차가 있으며, 본 그룹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개방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주민자치회 재원의 경우에는 조례에 주민세 상당액 지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가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그룹의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50점에 미치지 못하고, “하” 그룹의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5점 가량에 그치는 등 “상”, “중”, “하” 모든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조례에 주민자치회 재원에 관한 내용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주민자치회 재원 확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각 평가등급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중, 지자체별로 정량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비율로 구분하고, 상위 30%, 중위 40% 인근에서 발생하는 동일 점수는 같은 그룹에 포함함
- 그 결과, 그룹별 비율은 “상”그룹 22.9%, “중”그룹 48.6%, “하”그룹 28.5%로 나타남
- 전체 평가영역별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변환했을 때, “상”그룹은 64점이상, “중”그룹은 64점 미만 42점 이상, “하”그룹은 42점 미만으로 평가됨

[표 4-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구분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	주민자치회 사업	전체 평균
“상”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67.19	82.03	64.06	71.88
“중”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42.92	69.85	54.41	54.46
“하”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22.81	41.04	40.00	32.28
전체 100점 환산점수 평균	42.72	64.40	52.50	52.10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2.10점으로 나타났음

- 세부항목별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64.4점), 주민자치회 사업(52.5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42.72점)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본 평가에서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간사 및 사무국 설치 여부, 자체회비 등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 항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회 전체사업수 및 위탁건수로 파악한 주민자치회 사업 항목이 공개모집,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 “상”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32개소(2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71.88점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이 82.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구성(67.19점)과 주민자치회 사업(64.06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
- “중”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68개소로 4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4.46점으로 제시됨
 - 세부항목별로는 “상” 그룹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이 69.85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54.41점, 주민자치회 구성이 42.92점으로 나타남
 - “상” 그룹에서는 유사했던 2개의 항목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주민자치회 사업이 “중”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분야가 주민자치회 사업보다 10여 점 낮은 점수를 보여줌
- 마지막으로 “하”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32.2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40개소(28.5%)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항목별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41.04점)과 주민자치회 사업(40점)으로 유사한 반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22.81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 하위 28.5%를 이루는 “하”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요 내용인 공

개모집 비율, 분과위원회 구성, 양성평등 비율, 사회적약자 참여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재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 분야가 약간 높은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 분야는 유사한 평가결과를 나타냄
 - 점수의 분포를 보았을 때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 분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주목할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하위 30% 분야에 속하는 그룹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과정을 좀 더 주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가진 과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 각 평가등급은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중, 지자체별로 정량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비율로 구분하고, 상위 30%, 중위 40% 인군에서 발생하는 동일 점수는 같은 그룹에 포함함
 - 그 결과, 그룹별 비율은 “상”그룹 32.9%, “중”그룹 31.4%, “하”그룹 35.7%로 나타남
 - 전체 평가영역별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변환했을 때, “상”그룹은 75점 이상, “중”그룹은 75점 미만 50점 이상, “하”그룹은 50점 미만으로 평가됨

[표 4-4]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 그룹별 평가 결과

구분	주민총회 개최 건수	주민총회 주민참여인원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인원	전체 평균
“상”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84.06	93.48	78.99	75.00	84.42
“중”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72.73	48.86	74.24	40.91	59.85
“하”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38.00	3.00	48.67	35.00	28.50
전체 100점 환산점수 평균	64.05	47.14	66.67	50.00	56.73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6.73점으로 나타났음
 - 세부항목별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66.67점), 주민총회 개최 건수(64.05점)으로 유사하고, 다음으로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50점)이며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47.14점)의 순으로 나타남
 -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한 주민 참여인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특징을 보임
- “상”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46개소(3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84.42점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 항목이 93.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총회 개최 건수(84.06점),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78.99점),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75점)으로 나타남
- “중” 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44개소로 31.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9.85점으로 제시됨
 - 세부항목별로는 “상”그룹과는 다르게 주민총회 개최 건수가 72.73점, 분과위원회 개최건수가 74.24점으로 유사하였으며, “중” 그룹에서의 주민총회

- 와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 점수는 각각 48.86점과 40.91점으로 “상” 그룹의 점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는 특징을 나타냄
- “상” 그룹과 “중” 그룹에서의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한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주민 참여인원에 있어서는 두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주민의 참여수준을 보여주는 참여인원이 “중” 또는 “하” 그룹으로 갈수록 나빠지며, 상대적으로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하” 그룹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가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50개소(35.7%)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항목별로는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48.67점), 주민총회 개최 건수(38점)와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35점)이 유사하며, 매우 특징적인 것은 본 “하” 그룹에서의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은 단 3.0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임
 -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 항목에서는 “상, 중, 하” 그룹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 건수 및 주민참여인원으로 살펴 본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은 “상”, “중”, “하” 그룹간의 편차가 다른 평가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상위 30%에 속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및 주민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하위 30%에 속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및 주민 참여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하” 그룹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것은 주민총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주민총회 개최 건수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에서는 “상”과 “중” 그룹이 10점 내외의 차이를 보여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자체 읍면동 성과분석 종합

- 근린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의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한 결과, 각 분야에서 적용한 구분 방법을 준용하여,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비율로 구분하고, 상위 30%, 중위 40% 인근에서 발생하는 동일 점수는 같은 그룹에 포함하였음
- 그 결과 “상”그룹은 27.8%, “중”그룹은 42.9%, “하”그룹은 29.3%로 나타났고, 전체 평가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변환했을 때, “상”그룹은 66점이상, “중”그룹은 66점 미만 49점 이상, “하”그룹은 49점 미만으로 평가됨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영역의 전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6.16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별로는 근리자치 기반조성이 63.55점,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달성이 56.73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이 52.10점으로 나타남

[표 4-5]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구분	근린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전체 평균
“상”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81.04	66.82	74.79	72.14
“중”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63.99	52.55	60.56	57.10
“하”그룹 100점 환산점수 평균	46.27	37.45	33.94	39.60
전체 100점 환산점수 평균	63.55	52.10	56.73	56.16

- “상”그룹은 전체 140개 읍면동 가운데 39개소(27.8%), “중”그룹은 60개소(42.9%), “하”그룹은 41개소(29.3%)로 나타났는데, 각 영역별이나, “상, 중, 하” 그룹별로 아주 특징적인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 한편 근린자치 기반조성(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모든 그룹이 평균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평가영역에서는 그룹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상”과 “중”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분야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하”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분야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음

3. 평가 결과의 종합

- 근린자치 기반조성 평가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상” 그룹에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평가결과에 걸쳐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과 “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시군구의 홍보와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등의 활동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구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상, 중, 하” 그룹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의 홍보, 조례 내용,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러한 분야가 전체적인 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반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비해 시군구의 홍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평가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의 평가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결과가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재원” 항목에서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비교적 양호한 평가결과가 나타났음
 -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방식보다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 주민자치회가 자

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낮은 행정의 지원으로 인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평가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 항목에서 전체 평균은 47.14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상” 그룹의 평가 백분위가 90점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준 반면, “하” 그룹에서는 3점에 그쳐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이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총회 개최 건수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에서는 “상”과 “중”그룹이 10점내외의 차이를 보여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근린자치 기반조성(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모든 그룹이 평균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평가항목에서는 그룹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상”과 “중”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하” 그룹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음
 - 이것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표준 조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역량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제5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종합 및 정책제언

KRILA

제1절 연구의 종합

1. 주민자치회 실태분석 종합

- 본 연구의 주민자치회 실태분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척도 중 3.5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에는 40%이상의 응답자들이 행정 및 주민간의 소통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였음
 - 2017년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와 동일한 문항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선출의 민주성은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자체재원 확보 등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선출방법으로는 100%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을 절반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 자치기관이자,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이 주된 역할이라고 하였음
-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선출과 정수 조정, 주민총회와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도개선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위의 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와 정기적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운영의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전문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혔으며, 지자체 재정 지원, 자체 재원 확보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강화할 사업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2.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종합

- 본 연구의 주민자치회 실태분석을 종합하면 일정비율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조사표 조사에 의한 성과분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룹별로 우열을 가리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진행의 실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평가 항목은 크게 근린자치 기반조성(행정적,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음
-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홍보가 비교적 양호한 것에 비해 시군구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동 분야의 지자체별 평가결과의 차이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내용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에서는 최근 조례 제개정,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운영의 명시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에 주민자치회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백분위 평가점수가 25% 가량으로 조례에 반영된 지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자치회의 재정여건 개선의 높은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재원, 사업의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재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음
 - 실태조사와 첫 번째 평가항목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개선 필요성과 문제점이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재원의 규모보다는 주민자치회 재원분야의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구성(구성의 방법, 위원 선출 절차 등)이 다소 미흡한 것에 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결과 해석이 가능할 것임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에서는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참여인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정도보다는 참여인원이 낮게 평가되었음
 - 이것은 실태분석에서 주민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1.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지역사회내 위상 강화

-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에 대하여 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 없음
 - 행정안전부는 순수민간단체인 주민자치기구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하부 행정기구의 지위를 갖는 방안 내용의 합목적성과 적정성에 우려가 있음

구 분	주민자치회 실시모델(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입장
	협력형	통합형	
법적성격	주민자치기구 + 하부행정기구(일부)	주민자치기구 + 하부행정기구	주민자치기구(민간단체)

- 대표적인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 자치법이나 조례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담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임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위상 정립 및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 주민조직의 구심체로서의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및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 정립 및 읍면동 행정체제의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역할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 및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포함한 주민자치회의 지역 특성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고,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문화가 많은 지역은 주민자치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 자치회 분회로 기능하게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연합회가 주민 자치회 구성과정에서 일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등에 규정하는 방식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는 인구밀도는 낮고, 읍면의 면적은 넓으며, 전통적인 마을단위로 주민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각각의 마을단위에 마을자치회라는 형태로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주민자치회의 분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단위의 차이를 감안한 표준조례의 차별화 검토 및 개별 주민자치회가 제정하는 운영세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영세칙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민주적 운영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읍면동 현장에서 제도적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조례안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 대표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 지역 사회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자치회 구성에 민주적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대표성 제고가 필요함
 - 6시간의 주민자치(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지만,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현행의 주민단체 추천권 보장을 넘어선 주민추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총회 :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표준조례안 제14조의 2)하도록 규정됨
 -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총회 소집 또는 문서회람 방식 활용 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총회의 개념, 개최요건, 절차, 기능, 권한 등 세부사항이 없음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의 개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매뉴얼 또는 안내서 등이 준비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의 고도화 추진
 - 현행 자치계획은 읍면동의 현안사업들을 의제화하는 형태로 정리하고 종합한 의제사업을 종합화한 종합계획적인 성격이 강함
 -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자치계획의 논의 등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총회에서 논의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읍면동 행정구역에서의 주민총회를 읍면동 차원의 주민주권의 최고적 권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 및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부합하도록 주민총회를 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창출 및 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개방성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는 지난 시기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분과위원회 활동을 원하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안내되었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 제정과정에 반영하였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과개방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우 편협하게 이해하여,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로만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집행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분과위원회에 대한 전문성과 활동성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민조직, 직능단체, 공동체조직 등이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집행력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의 법제도적 근원은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일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법의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일 것임
 - '19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입법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가, '20년 7월 21대 국회 들어 재차 정부입법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에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26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주민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로 두는 동시에, 8항에는 본 법률 1항-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지방자치법-지자체 조례-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위임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민주적이고 주민대표성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례(조례의 경우 표준조례안이 어느정도 잘 반영하고 있음) 및 주민자치회 규약(운영세칙)을 연구 및 공론을 통해 마련하여 현장 주민자치회에 조속히 안내(제공)할 필요가 큼
 - 현재 일부 주민자치회는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주민자치회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거나, 아예 운영세칙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의 운영세칙을 그대로 계승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표준조례안이 있으나, 지역별 상황과 특성이 다른만큼 읍면동 지역사회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주민자치회 고유의 주민자치회 규약(운영세칙)을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과 상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바, 행정안전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세칙 관련 가이드라인(또는 운영세칙안)을 마련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의 재정력 확보와 사업실행의 내실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의 설립 및 지원 필요
 - 주민자치회가 재정지원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주민자치회의 재정력 확보 및 다양한 재정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가칭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함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이 공공성의 원칙에서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완비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사업의 설계 및 시행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과 현장의 운영과정 전반의 문제점 및 보완요구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는 광역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체계를 확립하여 중간다리 역할, 컨설팅 역할, 전반적인 상향식의 역할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재정지원 방안, 주민자치회 운영 표준매뉴얼의 제작, 현장 지향적 교육의 강화 등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지원 컨설팅단을 권역(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단위로 팀으로 편성, 분기 1회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발굴, 활동계획 등 자문활동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였음
 - '19~20년에는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 관련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또는 주민자치대학 등」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항시적 개설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관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주민자치 교육 과정의 위탁을 통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력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읍면동장 과정, 담당공무원 과정, 주민자치회 위원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민자치대학 또는 주민자치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만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자치분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및 국정홍보처 등에서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 교육의 이론 및 개념을 넘어선 실제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방법 등 주민자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및 내용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주민자치회의 역량수준은 평가영역별로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영역별 “상”, “중”, “하” 그룹에 따라 그 역량수준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각급 지원조직에서는 주민자치회

의 위원 및 주민자치회 조직의 “상”, “중”, “하” 그룹에 따른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4.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확립 및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주민자치 관련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위탁사무 발굴 및 수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 각 부처(행안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고용부, 기재부 등)의 공모 지원예산(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정리 및 지역사회와 주민자치회에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의 내실적인 정착 및 다양한 민간주민조직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민간조직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추진을 통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초기 단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
-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처리 범위 명확화 필요
 -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간 사무배분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면서 구체적 수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 ①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무(협의기능)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무(위탁기능)
 - ③ 주민자치회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자치기능)
 - 읍면동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위임된 사무 또는 민원 사무로 읍면동 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무를 시·군·구로 환원하는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인지, 사무

- 기구가 전결 처리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기능)의 경우도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무처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주권 구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체제,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체제로 운영되며, 주민자치회와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
-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 추진사업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우수사례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및 공유를 통한 학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읍면동 단위 통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가칭 읍면동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과 연계도 가능할 것임
- 주민자치회 추진에 대한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및 시행
-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 및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광역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 49권 제3호, pp: 279-302
- 곽현근(2018a),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자치의 의의와 제도화 방향, 정책웹진 <서울마을> 제4호
- 곽현근(2018b),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회 워크숍 발표자료
- 곽현근(2019), 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권자경(2016).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 김병국·권오철(2014), 일본의 주민자치조직: 자치회, 서울: 조명문화사.
- 김병국·최철호(2012).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순은(2012).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순은(2012),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pp.3-30.
- 김순은(2016), 패리쉬의회는 준자치단체로 지역개발부담금 부과, 월간 주민자치, 59권.
- 김재철(2012), 아파트 자치회의 행정정보조기능 도입방안, 포커스 광주, 제11호.
- 김필두·김병국·권오철·최인수(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필두·류영아(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김필두·류영아(2014),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김필두·최인수(2017),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정립,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정책이슈 리포트.
- 김필두·최인수(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한부영(2016),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찬동(2014),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보고서.
- 김찬동(2014),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찬동(2017), 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소고,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 김찬동(2017),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대전: 궁미디어.
- 김찬동(2019),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재설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흥주(2018),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방안,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 발표자료.
- 김흥주·곽현근·임승빈(2018),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용역보고서.
- 김흥주(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박상우(2014), 주민자치회 모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보고서.
- 박상우·백정미(2015),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수원시정연구원 보고서.
- 서울특별시(2018),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 매뉴얼.

- 설선미·오재일(201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pp: 51-71.
- 소진광 외(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
- 신윤창·손진아(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1권 제4호, pp: 93-116.
- 이병렬·이종수(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 이승종·김혜정(2018),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자성(2012),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정책 Brief: 1-12.
- 이정석(2015).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 이현우·최준규(2019),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조직 체계 - 일본 주민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월간 주민자치, 89권.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전주상(2010), 영국 패리쉬의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pp:97-120.
- 주장환·윤성욱(2014),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제도 사례 수집: 영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5).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최인수·김필두·양은경(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최인수·이병기(2015), 부산지역 주민자치회 적정모델 진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최인수·장인성(2019), 자치분권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해외 자료조사 연구, 독일편
독일의 지방자치법(Gemeindeverfassung),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2013).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명회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2020).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Chanan, G. (1999). Local Community Involvement: A Handbook for Good Practic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De Vries, M. S. (2000). The rise and fall of decentr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arguments and practices i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8: 193-22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omerville, P. (2005). Community governance and democracy. *Policy and Politics*, 33(1): 17-114.
- Somerville, P. (2011). Multiscalarity and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6(10): 81-105.

부록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설문지

KRILA

I.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가시적인 성과 조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참고 자료 도출

2.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 조사 대상: 214개 시범 실시 읍면동 지역
 -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장 포함 5명
 - 담당 공무원: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읍면동장 포함) 등 5명 내외
 - 기타 이해당사자(전문가, 지원기관) 5명 이내
- 샘플크기: 2,500명 내외 (시범실시 지역 읍면동당 각각 10~15명 사이)
- 조사 방법: 표준화된 질문지에 온라인 응답 또는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조사
- 표본추출방법: 해당 지역 내에서 무작위 추출
- 조사 기간: 2020. 5.25 ~ 6.3(10일간)

3.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비고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별	
	시범실시 읍면동별	
	신분별(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자치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의 관심과 참여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읍면동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기능 및 역할	
	주민자치회 위상(행정 및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위원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인식	
	위원규모 확대 및 분과 개방성에 대한 인식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도입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한 인식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대한 인식	
	시군구청장 주민자치회 정책추진 의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214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국가의 근린자치 정책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거)에 따라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

033-769-9850, ischoi@krila.re.kr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자치회와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사회(마을)가 많이 발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설정하고 자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주민자치회는 우리동네(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특별히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4개까지)

- ①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② 마을의 안전()
- ③ 생활환경 개선() ④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 ⑤ 행정과의 소통() ⑥ 마을공동체 활동()
- ⑦ 마을협동경제 활동() ⑧ 마을축제()
- ⑨ 프로그램(강좌)() ⑩ 마을의제 형성()
- ⑪ 자치계획 수립() ⑫ 주민공론의 주민총회()
- ⑬ 기타()

2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

연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선출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주민자치회 구성시 추천제 실시가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자치회 구성시 사전(사후)교육이수제가 위원 활동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민자치회 자체재원(회비, 마을기금 등)의 확충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위원 선출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0% 공개모집 → 100% 공개추천제 선정 방식()
- ② 100% 공개모집 →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 ③ 일정비율 공개모집 +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 100% 공개추천제 방식 선정 ()
- ④ 일정비율 공개모집 + 일정비율 직능단체 및 이통장 추천 →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 ⑤ 일정비율 읍면동 주민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출제 방식()
- ⑥ 기타()

③ 주민자치회의 위상 및 개선방안

16.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의 대표자치기관() ② 읍면동 의회기능(기관)
- ③ 읍면동의 행정정보조기관() ④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 ⑤ 기타 ()

17.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자치회장 우위() ② 읍면동장 우위()
- ③ 상호 대등한 관계() ④ 모르겠다()

18.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재 위상은 무엇입니까?

- ① 주민의 대표() ② 각 단체의 대표()
- ③ 읍면동 행정의 자문위원() ④ 기타()

19.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2개까지)

- ① 읍면동 행정 협력사무() ②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 ③ 주민자치사업() ④ 수익사업()
- ⑤ 기타()

구 분	주민자치회가 수행 가능한 사무
읍면동 행정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향토방위 관련 업무 협조 ▶ 중장기 읍면동발전계획의 수립·집행·평가 ▶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 선정 및 수행
시군구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 시군구청 홍보, 캠페인 활동 ▶ 행정·공공기관 주관 교육 등 ▶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 마을 휴양지(해수욕장 등) 관리 ▶ 주차(수급실태조사, 주차장 관리·요금징수 등) 업무 ▶ 농업용수 및 관정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지역전통문화유산 관련 업무 등
주민자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활동 (주민자치, 인문교양, 방과후교육 등) ▶ 읍면동 각종 행사(마을축제, 체육대회, 읍면동민의 날 등) 추진 ▶ 공동육아시설, 어린이도서관, 생활협동조합 등 운영 ▶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 마을대청소 ▶ 동호회·스포츠 활동 ▶ 불우이웃돕기 등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운영 ▶ 협동조합 운영

4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적 사전(사후)교육이수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의 현행방식(공개모집+공개추천제)은 이전(제한적 공모+단체추천)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주민자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확대된 위원 정수(통상적 20~50명)는 적절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읍면동 마을의제 형성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민자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의 개방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자치(마을)계획이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개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지자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활용한 주민자치회 재정지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주민자치회와 잘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주민자치회 의견이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29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개방형직위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 (시민추천제) 읍면동장을 공무원중 주민선호투표 등 일정과정을 통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이 임명 / (개방형 직위제) 일반인 가운데 일정절차를 통해 5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읍면동장으로 임명	①	②	③	④	⑤
30	위의 '18년 이후 제도개선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㉔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성 조사

연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적 사전(사후)교육이수제는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2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의 현행방식(공개모집+공개추첨제)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3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의 개최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민주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4	지자체 주민세 상당액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재정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5	주민자치회(주민)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주민자치회의 협의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자치회(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우리동네 주민자치회의 자치사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의 일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분과의 개방적 운영은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도움에 된다.	①	②	③	④	⑤

㉠ '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조사

39-49. 읍면동 지역사회와 주민자치회 운영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

연번	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39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의 변경(공개모집+공개추첨제)	①	②	③	④	⑤
40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	①	②	③	④	⑤
41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전(사후)교육이수제	①	②	③	④	⑤
42	분과위원회의 주민참여 개방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43	마을의제 형성과 자치(마을)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44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시행	①	②	③	④	⑤
45	주민세(개인균등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재정 지원	①	②	③	④	⑤
46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①	②	③	④	⑤
47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 개방형직위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48	시군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정책추진의지(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①	②	③	④	⑤
49	읍면동장의 주민자치회 지원의 적극성	①	②	③	④	⑤

50.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다음 중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3개까지)

- ① 주민의 낮은 참여률() ②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미흡()
- ③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미흡() ④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부족()
- ⑤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성 미흡() ⑥ 분과위원회 활동 미흡()
- ⑦ 회의운영 민주성 부족() ⑧ 독립적 운영 미흡()
- ⑨ 기타()

51. 행정안전부에서는 '19년부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들어본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2개까지)

- ①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② 주민자치회 관련 지역강사(전문가) 양성 및 활용성 증진()
- ③ 권역별 컨설팅 및 중간지원 조직 및 체계 마련()
- ④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확대()
- ⑤ 기타()

53.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정책 및 운영활성화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㉚ 일반적 사항

54.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도입(출범) 시기는?

- ① 2013~2014년() ② 2015~2016년() ③ 2017년()
④ 2018년() ⑤ 2019년()

55. 선생님의 신분은 ?

- ① 주민자치회 위원() ② 시군구청 공무원() ③ 읍면동 공무원()
④ 전문가그룹() ⑤ 일반 주민() ⑥ 기타()

56. 선생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57. 선생님의 연령은 ?

- ① 20세 미만()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69세 ⑦ 70세 이상()

58. 선생님의 거주 지역은 ?

- ① 특광역시() ② 도() ③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① 시() ② 군() ③ 자치구()
① 동() ② 읍() ③ 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구성과 운영 서면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하여 수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214개 읍면동(2019..6)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그동안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의 다양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자치회 정책입안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거)에 따라 순수하게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
033-769-9850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 평가
- 주민자치회 운영모델 개선(안) 마련과 주민자치회법제화(안) 참고자료 활용

2. 조사대상

- 214개 시범실시 읍면동장 (2019.4월 기준, 참조: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 작성자 : ()시/군/구, () 읍·면·동 담당
- 조사대상기간 : 2017.01월 ~ 2019.12월

II. 조사의 내용¹⁰⁾

1. 읍면동 기본현황

인 구	000세대 / 000명 (남000명/여000명)
면 적	00km ² (시군구 전체의 00 %)
행정구역	00통(리) 00반
예산규모	000백만원
조 직	1 읍면동장, 00 팀, 00 팀, 00 팀 등
공 무 원	현원 00명 (1인당 주민수 000명)
주요기관	경로당 0, 복지관 0, 초등학교 0, 중학교 0, 고등학교 0, 도서관 0 등

10) 예산 등 재정과 관련된 모든 단위는 별도의 예시가 없는 한 천원단위로 작성 요망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 포함) 예산 지원 현황(단위: 천원)

구분	계	사업운영	강사수당	자원봉사 운영	자치위원 수당	자산취득	시설비	기타
계								
2019								
2018								
2017								

2.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제도화 및 시군구 지원현황

○ 조례 : 년 월 일(제정/개정), 한시조례() 시범 읍면동 대상한정()

규칙 : 년 월 일(제정/개정), 한시조례() 시범 읍면동 대상한정()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자체규약의 제정 : 년 월 일

○ 다음은 조례상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임

- 위원 공개 모집 여() 부()
- 위원선정 추천제 여() 부()
- 위원 선정 추천제 모집 비율 () %
- 자치계획 수립 내용 명시 여(), 부()
-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 명시 여(), 부()
- 분과위원회 일반 주민참여 명시 여(), 부()
- 재원 관련 주민세 상당액 지원 여(), 부()
- 재원 관련 주민참여예산 연계 명시 여(), 부()

○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세칙 또는 자체규약의 제정 : 년 월 일

○ 시군구/읍면동의 행재정적 지원 등(단위: 천원)

구분	지원조례명	전담조직명	전담 공무원수	연평균 재정지원액 (최근 3년간)	지원내용	기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

○ (위원구성 전(前))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과정

교육유형	주관	기간	사전 교육시간	사전교육 제공횟수	총 참여자수	주요 내용	교육 주체
설명회							시군구/ 읍면동
교육과정							
기타							

○ (위원구성 후(後)) 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역량강화 과정

교육유형	주관	기간	총 교육시간	제공횟수	총 참여자수	주요 내용	교육주체
수업·강의							시군구/ 읍면동
활동·워크숍							
컨설팅							
설명회							
기타							

※ 기타 항목은 선진지 견학, 주제별 학습모임 등 주요 학습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과정 운영

교육유형	주관	기간	총 교육시간	횟수	참여자수	주요 내용	교육주체
수업·강의							시군구/읍 면동
활동·워크샵							
컨설팅							
설명회							
기타							

○ 일반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회 홍보

교육유형	주관	기간	횟수	주요 내용	홍보주체
온라인					시군구/읍면동
오프라인					

○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정책 및 주민자치회 관련 홍보방법

- ① 읍면동 게시판() ② 현수막/플래카드() ③ 시군구 홈페이지()
- ④ 읍면동 홈페이지() ⑤ 지역신문 광고() ⑥ 가구별 안내문 발송()
- ⑦ 온라인 카페·SNS() ⑧ 문자 등 모바일 발송() ⑨ 기타()
- ⑩ 홍보하지 않음()

4.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시기 및 임기 : ()년 ()월 ()일 / 임기()년

○ 구성방법 및 현황

구분	조례상 정원	지원자	선정자	현원	주민 또는 직능단체명 등
총원					
공개모집 후 추천					

구분	조례상 정원	지원자	선정자	현원	주민 또는 직능단체명 등
시·군·구청장 추천					
읍·면·동장 추천					
이통장 추천					
주민·직능단체 추천					
주민·직능단체 추천					
주민·직능단체 추천					
주민·직능단체 추천					
주민·직능단체 추천					
기타					

※ 추천자격 혹은 관련단체명의 경우 위원추천의 배경이 된 단체(예: 교수·변호사 등 전문자격·직종이나, 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등 관련단체명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 ① 주민자치회 조례 상의 정원 : 최소 ()명, 최대 ()명
- ②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등 관련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만 응답)
 자체 운영규정상 정원 : 최소 ()명, 최대 ()명
- ③ 시범사업 실시 이후 실제 위원 수 : 최소 ()명, 최대 ()명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비 : 여성()명, 남성()명, 전체()명

○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수 : ()명

○ 위원 중 중도 사퇴자 수 : 명

사퇴자	위촉일시	기존 임기종료 일시	사퇴일시	사퇴 사유	기타
1					
2					
⋮					

○ 위원 중도 사퇴자 대비한 예비위원 현황

- ① 주민자치회 조례 상의 예비위원 수 ()명
- ② 실제 운영상의 2019년 12월 예비위원 수 ()명

○ 주민자치회 회장의 선출

- ① 위원 선거() ② 위원 호선·추대() ③ 시군구청장 추천()
- ④ 읍면동장 추천() ⑤ 기타()

※ 기타의 경우 선출방법(예: 연장자순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회 조직구성

구분	구성시기	위원수	기능·역할	비고
회장				
부회장				
⋮				

※ 빈 칸에 주민자치회 조직도 상의 모든 기능(감사, 간사, 사무국,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업단·추진단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최근 3년간 개최 횟수)

- ① 정기회의(연 회) ② 임시회의(연 회) ③ 분과위원회(연 회)
- ④ 기타(, 연 회)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명	총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수	주민 참여수	연평균 회의개최수	직능단체 참여여부 및 단체명	주요 활동내용

○ 실무조직(사무국)의 구성

- ① 독자적 사무국이 있음() ② 읍면동 사무소 대행() ③ 없음()

○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유급사무원의 채용 여부

- ① 없음() ② 있음(), 있는 경우 아래 표 기입

사무원수	채용기간	월급여(천원)	근무시간	업무	재원조달방안
	()년 ()개월				예산/자체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 및 활동 공간(단위 천원)

용도구분	규모 (㎡)	사용기간(년월)	소유자	관리자	임대료 (원/월)	재원조달방안
사무용		∞				예산/자체지원
모임공간		∞				예산/자체지원
교육·활동장		∞				예산/자체지원
기타		∞				예산/자체지원

※ 규모의 경우 대략적인 규모를, 소유자 및 관리자(예: 읍면동사무소 등), 임대료(예: 무상) 등은 빠짐없이, 기타의 경우 비교란에 용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세칙 또는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 ① 제정 여부 : 여 (), 부 ()
 ② 제정 및 운영중이라면, 제정시기 ()년 ()월

○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업

구분	자영업	주부	회사원	농축수산업	전문직	공무원	기타	계
수								

○ 주민자치회에 사회적약자 위원 참여

구분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	기타	계
수						

○ 읍·면·동장의 임명방식

- ① 전통적인 방식: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군·구청장 임명()
 ② 주민추천제에 의한 시·군·구청장 임명() :
 시행(임명)일시 ()년 ()월, 임기 ()년
 ③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개방형 직위 임용() :
 시행(임용)일시 ()년 ()월, 임기 ()년

○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주민대상 홍보 방법

- ① 읍면동 게시판() ② 현수막/플래카드() ③ 시군구 홈페이지()
 ④ 읍면동 홈페이지() ⑤ 지역신문 공고() ⑥ 가구별 안내문 발송()
 ⑦ 온라인 카페·SNS() ⑧ 문자 등 모바일 발송()
 ⑨ 기타() ⑩ 홍보하지 않음()

- 기타 주민총회, 협의·심의, 위탁사업, 주민자치사업 중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우수사례로 추천할만한 활동·사업이 있으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6. 주민자치회의 재정/재원

○ 주민자치회의 수입

구분	금액(천원)	관리책임	시기	예산세부내역	재원관련
공모사업					국가/시도/시군구
주민세					
주민참여 예산제					
시도지원					
시군구지원					
자체 회비					
자체수익금					회비/수강료/기금/사업수익
기타					
합계					

※ 자체수입의 경우 회비·수강료(수입)·마을기금(전입)·사업수익 등의 수입원별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회의 지출

구분	금액(천원)	지출책임	시기	지출세부내역	기타
인건비					
사업비					
역량강화					
운영비(회의비)					
기타					
합계					

- 주민자치회의 회계·재정 관리자
 - ① 읍면동장 혹은 담당공무원() ② 주민자치회장()
 - ③ 주민자치회 간사·사무국() ④ 기타()

- 주민자치회의 회계관련 감사 및 모니터링 수행현황
 - ① 회의 등에서 단순한 보고 수준() ② 관계공무원 관리()
 - ③ 주민자치회내 별도의 감사가 담당 및 수행()
 - ④ 기타()

- 주민자치회의 기금·적립금 및 공동재산 운용 여부
 - ① 없음 혹은 단순 통장잔고 관리() ② 별도 자체기금 운용()
 - ③ 별도 공유재산(부동산) 운용() ④ 자체기금 및 부동산 운용()
 - ④ 기타()

7. 주민참여·민관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

- 주민자치회 협력기관·단체(지역내 지원센터 등 포함)

기관·단체명	유형	협력기간(년월)	협력내용	비고
		~		
		~		
		~		
		~		
		~		
		~		
		~		
		~		

※ 유형은 ① 국가·공공기관, ② 교육·연구기관, ③ 기업·금융기관·경제단체, ④ 사회단체봉사(문화·체육·복지·종교 등 포함), ⑤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사업 등에 있어서 지역내 인적·물적·지적 등 유·무형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례가 있으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8. 주민자치회 제도·정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지표(2020년)

KRILA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식	등급	비고	
근린 자치 기반 조성 (40%)	시· 군· 구	재정 지원	연간 평균 지원액 (추후 보정)	A(상),B(중),C(하)	상대 평가	
		교육, 컨설팅, 견학	시간	교육, 컨설팅, 견학 시행시간	A(상),B(중),C(하)	상대 평가
		홍보	횟수	주민 홍보횟수 (온라인/오프라인 여부)	A(상),B(중),C(하)	상대 평가
		조례내용	제개정	최근 3년 이내 조례 제·개정 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위원 선정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첨제 비율 추첨제비율 80%이상 상 40-79% 중 40%미만 하	A(상),B(중),C(하)	절대 평가
			자치계획	자치계획 수립/내용 명시	A(여), B(부)	절대 평가
			주민총회	주민총회 운영	A(여), B(부)	절대 평가
			분과 개방성	분과위원회 일반 주민참여	A(여), B(부)	절대 평가
			재원	주민세 상당액 지원	A(여), B(부)	절대 평가
		주민참여예산 연동 명시 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시· 군· 구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주민자치회 자체교육	횟수/시간	사전교육 등 횟수	A(상),B(중),C(하)	상대 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식	등급	비고	
		컨설팅, 견학	추가교육 이수	사전교육(6시간) 이외의 추가교육 시간	A(상),B(중),C(하)	상대 평가
		주민자치회 자체홍보	횟수	주민 홍보횟수	A(상),B(중),C(하)	상대 평가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유무	A(유), B(무)	절대 평가
주민 자치회 구성 및 운영 (40%)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회 정원대비 공개모집 지원자(사전교육이수자) 수		1.5배 이상(A) 1.0배 이상(B) 1.0 미만(C)	A(상),B(중),C(하)	절대 평가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갯수		A(상),B(중),C(하)	상대 평가
			비위원 주민참여율			
		주민자치회 유관 주민조직수		직능단체 등	A(상),B(중),C(하)	상대 평가
		주민자치회 위원회 양성평등 비율(%)		40~60%(A) 30%~40%(B) 30%이하(C)	A(상),B(중),C(하)	절대 평가
	주민자치회 사회적약자(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구성원)의 참여 여부		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운영 및 재원	회의(정기·임시) 개최 정도		월 2회 이상(A) 월 1회 이상 2회 미만(B) 월 1회 미만(C)	A(상),B(중),C(하)	절대 평가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여부		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주민자치회 자체운영세칙		제정 및 운영 여부	A(여), B(부)	절대 평가
		자체 회비 및 사업수익금		2개 해당(A) 1개 해당(B) 해당 없음(C)	A(상),B(중),C(하)	절대 평가
자체회비(수익금) 액수			상대평가 30%/50%/20%	A(상),B(중),C(하)	상대 평가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식	등급	비고	
	사업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 수	상대평가 30%/50%/20%	A(상),B(중),C(하)	상대 평가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건수	3건 이상(A), 1-2건(B), 1건 미만(C)	A(상),B(중),C(하)	절대 평가	
목적 달성 (20%)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주민 참여 정도	주민총회 개최 건수	건수/최근 3개년	A(상),B(중),C(하)	절대 평가
			참여인원	연 참여주민수/ 해당 읍면동 전체주민수	A(상),B(중),C(하)	상대 평가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건수(연평균)/최근 3개년	A(상),B(중),C(하)	상대 평가
			주민 참여인원	분과위 참여인원 총수/ 해당 읍면동 전체주민수	A(상),B(중),C(하)	상대 평가
기타 (가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세 상당분 지원 여부		2개 해당(A) 1개 해당(B) 해당 없음(C)	A(상),B(중),C(하)	상대 평가	

부록4

2020년 6월 기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626개 읍면동, 118개 시군구

※ '20년 상반기 시범실시 선정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171)	강남구	역삼2동	서울 (171)	금천구	독산2동	서울 (171)	동작구	사당4동	
		일원1동			독산3동			사당5동	
	강동구	고덕1동			독산4동			상도1동	
		길동			시흥1동			상도2동	
		명일2동			시흥2동			상도3동	
		성내2동			시흥3동			상도4동	
		천호3동			시흥4동			신대방1동	
	강북구	미아동			시흥5동			신대방2동	
		삼각산동			공릉2동			흑석동	
		번3동			상계1동			공덕동	
		수유2동			상계9동			서강동	
		인수동			월계1동			서교동	
	강서구	등촌2동			중계4동			마포구	성산2동
		방화3동			하계1동				용강동
		우장산동			도봉1동				남가좌1동
		화곡3동		도봉2동	북가좌1동				
	관악구	화곡6동		방학1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림동		방학2동			천연동		
		신림동		방학3동			홍제1동		
		신사동		쌍문1동			금호1가동		
		중앙동		창2동	금호2.3가동				
		청룡동		창4동	금호4가동				
		성현동		창5동	마장동				
		광진구		구의2동	답십리1동		성동구	사근동	
	구의3동			이문1동	성수1가1동				
	자양4동			전농2동	성수1가2동				
	중곡4동			제기동	성수2가1동				
	화양동			회기동	성수2가3동				
	구로구	가리봉동		노량진1동	송정동				
		개봉1동		노량진2동	옥수동				
		구로4동		대방동	왕십리도선동				
		오류1동		사당1동	왕십리제2동				
	금천구	가산동		사당2동	용답동				
		독산1동		사당3동	응봉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171)	성동구	행당1동	서울 (171)	은평구	구산동	부산 (10)	동래구	인락2동
		행당2동			녹번동		북구	금곡동
	성북구	길음1동			대조동		사하구	화명2동
		동선동			불광1동			괴정2동
		보문동			불광2동		신평1동	
		삼선동			수색동		연제구	거제3동
		석관동			신사1동			연산1동
		성북동			신사2동		영도구	청학1동
		월곡2동			역촌동		해운대구	반송2동
		장위1동			응암1동		대구 (6)	남구
		정릉2동			응암2동	달서구		봉덕2동
		종암동			응암3동	동구		본동
	송파구	가락1동			증산동	서구		신암4동
		마천2동		진관동	수성구	비산23동		
		방이2동		창신3동		고산2동		
		위례동		평창동	계양구	계산1동		
		잠실4동		혜화동		계산2동		
	잠실본동	광희동		계산3동				
	양천구	목2동		다산동		계산4동		
		목3동		동화동		계양1동		
		신월5동		명동		계양2동		
		신정3동		소공동		계양3동		
	영등포구	신정4동		신당5동		작전1동		
		대림1동		신당동		작전2동		
		문래동		약수동		작전서운동		
		신길5동		을지로동	효성1동			
		양평2동		장충동	효성2동			
	용산구	여의동		중림동	남동구	간석1동		
		용문동		청구동		간석2동		
		용산2가동		필동		간석3동		
		한강로동		황학동		간석4동		
		한남동		회현동		구월1동		
	은평구	효창동		중랑구		망우본동	구월2동	
		갈현1동				면목본동	구월3동	
		갈현2동		동구		범일1동	구월4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 (70)	남동구	남촌도림동	인천 (70)	연수구	송도1동	광주 (32)	북구	양산동	
		논현1동			송도2동			용봉동	
		논현2동			송도3동			운암3동	
		논현고잔동			송도4동			임동	
		만수1동			연수1동			중흥2동	
		만수2동			연수2동			풍향동	
		만수3동			연수3동			금호1동	
		만수4동			옥련1동			금호2동	
		만수5동			옥련2동			동천동	
		만수6동			청학동			상무2동	
		서창2동			신흥동			치평동	
		장수서창동			동인천동			풍암동	
		미추홀구			용현1.4동			중구	영종동
	용현5동		영종1동	덕암동					
	부평구	갈산1동	광산구	운서동	울산 (4)	북구	목상동		
		부개1동		수완동			법1동		
		부개3동		신가동			법2동		
		부평2동		신청동			비래동		
		부평3동		어룡동			석봉동		
		부평5동		우산동			송촌동		
		부평6동		운남동			신탄진동		
		산곡3동		침단1동			오정동		
	청천2동	침단2동	종리동						
	서구	가정1동	광주 (32)	하남동			동구	가양2동	
		가좌2동		백운2동				용전동	
		가좌4동		봉선1동				서구	갈마1동
		검단동		월산4동					도마1동
		검암경서동		월산5동	도마2동				
		불로대곡동		주월1동	유성구	월평2동			
		신현원창동		동명동		온천1동			
	연희동	산수1동	원신흥동						
	연수구	동춘1동	북구	자산2동	북구	진잠동			
		동춘2동		매곡동		농소1동			
		동춘3동		문흥1동		농소3동			
		선학동		삼각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울산 (4)	울주군	연양읍	경기 (104)	광명시	소하2동	경기 (104)	수원시	인계동		
	중구	태화동			학은동			행궁동		
세종 (10)	세종시	부강면		군포시	군포1동			시흥시	호매실동	
		장군면			오금동		과림동			
		도담동		고촌읍	대야동					
		한솔동		구래동	매화동					
		연동면		김포본동	신천동					
		연서면		대곶면	월곶동					
		전의면		마산동	정왕1동					
		전동면		사우동	정왕2동					
		새롬동		양촌읍	정왕3동					
		종촌동		운양동	정왕4동					
경기 (104)	고양시	고양동		김포시	월곶면		안산시	일동		
		식사동			장기동			원곡동		
		정발산동			장기본동		오산시	세마동		
		주엽1동			통진읍			조리읍		
		창릉동			풍무동			법원읍		
		풍산동			하성면			파주읍		
	화정2동	진건읍			파평면					
	광명1동	평내동			적성면					
	광명시	부천시			광명2동			대산동	파주시	교하동
					광명3동			범안동		운정1동
				광명4동	부천동		운정2동			
				광명5동	상동		운정3동			
				광명6동	성곡동		금촌1동			
				광명7동	소사본동		금촌2동			
				철산1동	신중동		평택시	오성면		
				철산2동	심곡동			진위면		
				철산3동	오정동			송북동		
				철산4동	중동			비전2동		
				하안1동	수원시		광교1동	포천시	소흘읍	
				하안2동			매탄2동		영북면	
하안3동				서둔동			일동면			
하안4동				송죽동			포천동			
소하1동	울천동	화성시		향남읍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기 (104)	화성시	남양읍	강원 (42)	평창군	평창읍	충남 (64)	논산시	채운면						
		팔탄면			미탄면			취암동						
		정남면			방림면			고대면						
		진안동			대화면			당진1동						
		병점1동			봉평면			당진2동						
		반월동			용평면			당진3동						
		화산동			진부면			대호지면						
		동탄4동			대관령면			면천면						
		동탄5동			남면			석문면						
		동탄7동			내면			송산면						
		동탄8동			내촌면			송악읍						
		강원 (42)			강릉시			강남동	홍천군	홍천읍	동면	부여군	부여군	대천4동
								경포동			두촌면			외산면
교1동	북방면		초촌면											
교2동	서면		홍산면											
구정면	서석면		내산면											
내곡동	홍천읍		서산시	대산읍										
연곡면	화촌면			부석면										
주문진읍	진천읍			서천군		마산면								
중앙동	덕산읍		문산면											
간성읍	광혜원면		비인면											
거진읍	신도안면		서면											
고성군	죽왕면		충남 (64)	논산시	강경읍	아산시	배방읍							
	토성면				반포면		온양3동							
	현내면				정안면		온양6동							
	인제군				추부면		탕정면							
춘천시	강남동		충남 (64)	논산시	가야곡면	예산군	대흥면							
	근화동				강경읍		덕산면							
	석사동				광석면									
	신북읍				벌곡면									
	신사우동				부적면									
	조운동				부창동									
	퇴계동	상월면												
	후평1동	성동면												
	후평2동	연산면												
		은진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충남 (64)	예산군	예산읍	전남 (28)	순천시	덕연동	경남 (48)	거창군	위천면	
		백석동			별량면			주상면	
	천안시	성정1동			서면		고성군	상리면	
		성환읍			송광면			고성읍	
		원성1동			외서면			구만면	
		풍세면			주암면			마암면	
	청양군	청양읍			중앙동			남해군	회화면
		정산면			황전면				창선면
	태안군	원북면			장성읍		장성군	밀양시	상남면
									해남군
		홍성군		결성면	황산면		삼문동		
				광천읍	북평면				
				장곡면	강남동		사천시	사천읍	
				홍동면	명륜동			벌용동	
홍북읍	송하동	의령군	용덕면						
홍성읍	안기동		상봉동						
전북 (3)	군산시	옥산면	경북 (10)	안동시	옥동	진주시	상평동		
	완주군	고산면			용상동		가호동		
	익산시	영등1동			중구동		창녕군	고암면	
곡성군	죽곡면	태화동			남지읍				
		나주시			왕곡면	의성읍	창원시	내서읍	
송월동	안계면			노산동					
빛가람동	일운면			북면					
전남 (28)	담양군	가사문학면		거제시	하청면	성주동			
		고서면			옥포1동	양덕2동			
		금성면			옥포2동	용지동			
		담양읍	수양동		웅남동				
		대덕면	가북면		웅동2동				
		대전면	가조면	진동면					
		무정면	고제면	충무동					
		봉산면	남상면	풍호동					
		수북면	남하면	통영시	중앙동				
		용면	마리면		하동군	화개면			
		월산면	복상면	함안군	가야읍				
		창평면	신원면		합천군	가야면			
		목포시	신흥동	웅양면					

부록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2020년 4월 기준)

KRILA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 8. 30.)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 8. 28.)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222(2020. 4.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

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 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